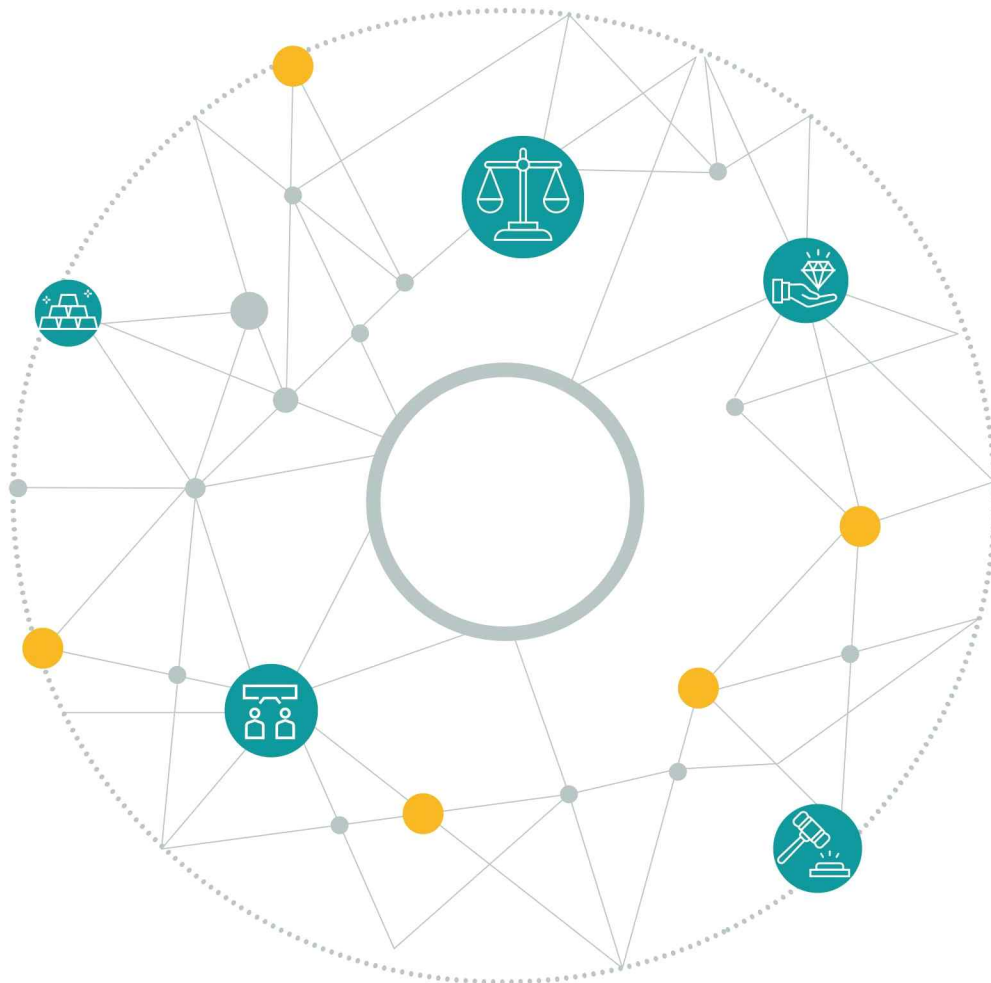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4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PART

I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가. 헌법적 가치의 실현	2
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3
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3
라.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4
마.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4
바.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4
2. 추진경과	6
가. 청탁금지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제출까지(‘11.6월~’13.8월)	6
나. 국회 제출 이후 제정·공포에 이르기까지(‘13.8월~’15.3월)	7
3. 제정취지	8
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8
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8

PART

II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15
가. 적용대상기관	15
나. 적용대상자	15
1) 공직자등	15
2) 공무수행사인	17
3) 기타	19

다. 구체적 사례(적용대상자 관련)	20
라. 유권해석 사례	21
2. 장소적 적용범위	33
가. 입법주의	33
나. 구체적 사례(속지주의 관련)	34

PART

III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의무

1.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38
2.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39
3. 공직자등의 책무	39

PART

IV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의 금지	42
가. 개요	43
나.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43
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44
1) 부정청탁의 상대방과 범위 확정의 필요성	44
2)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44
3) 구체적 사례(지휘감독권 있는 상급자의 지시 관련)	46
4) 유권해석 사례	47
라. 부정청탁의 방법	49
1) 직접 청탁의 의미	49

Contents

2)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49
3)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53
마.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55
1) 법령을 위반하여	55
2)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64
2. 부정청탁 대상직무	66
가.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67
나.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68
다.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69
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70
마.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71
바.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72
사.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73
아.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74
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75
차.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76
카.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77
타.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77
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78
하.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78
거. 유권해석 사례	80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86
가. 개요	86
나.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87
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88
라.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88
마.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89

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90
사. 구체적 사례(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관련)	91
아. 유권해석 사례	93
4.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95
5.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97
가.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1차)	98
나. 부정청탁의 신고(2차)	99
1)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	99
2) 신고 방법	102
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103
1) 조치의 내용	103
2)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103
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104
1) 공개 여부의 결정	104
2)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104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05
가. 징계	106
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106
다. 구체적 사례(직접 청탁 관련)	107
라. 유권해석 사례	109

Contents

PART

V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수수 금지 금품등	112
가.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113
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인 경우	113
2)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116
나. '동일인'과 '1회'	117
1) 개요	117
2) 동일인	118
3) 1회	122
다. 회계연도	124
라.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125
1)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규정의 내용	125
2) 다른 법령상의 직무관련성	126
3)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의미	127
4) 유권해석 사례	133
마. 금품등	135
1) 종류	135
2) 가액 산정 기준	136
3) 유권해석 사례	139
바. 금지 행위	141
1) 공직자등의 경우	141
2) 제공자의 경우	141
3) 공직자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142
4) 유권해석 사례	143
사.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144
1) 개요	144

2) 참고 입법례	145
3) 구체적 사례(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145
4) 유권해석 사례	147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48
가. 개요	148
나.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149
다.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149
라.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57
1) 정당한 권원의 판단과 범위	157
2) 사용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157
3) 무이자 소비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158
4) 가장매매 : 정당한 권원 부정	159
마.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160
바.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160
사.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162
아.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165
자.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66
차. 유권해석 사례	169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90
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191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무	191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191
3)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191
4)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192
5) 유권해석 사례	193
나.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194

Contents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95
가. 제정 이유	195
나. 외부강의등의 범위	196
1) 법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와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관계	196
2)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197
3)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197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	198
라.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199
1) 사례금 상한액(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	199
2) 사례금 각각 지급가능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200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200
마. 유권해석 사례	202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10
가. 징계	211
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1
다. 과태료 부과	211
라. 과태료 부과 및 취소	212
마.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213

PART

VI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기관	216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217
가. 위반행위의 신고	218
1) 청탁금지법상 신고 체계	218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219
나. 신고 처리	219
1)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219
2)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219
3) 조사기관의 조사 범위	220
다.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221
1) 이의신청	221
2) 재조사 요구	221
3.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222
가. 보호·보상 대상 신고자	224
1) 개요	224
2) 보호 대상 신고	224
3) 보상 대상 신고	225
나. 신고자 보호	226
1) 비실명대리신고	226
2)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226
3) 보호조치	226
다. 보상금·포상금·구조금	228
1) 보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228
2)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229

Contents

3) 구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229
4) 보상금·포상금에 공통되는 사항	230
5) 민간부문인 기관 관련 신고자의 포상금·보상금 지급 문제	230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232
가.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233
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233
2) 부당이득의 환수	233
나. 비밀누설 금지	234
다. 교육과 홍보	235
라.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235

PART

VII 징계 및 벌칙

1. 징계	238
2. 벌칙	239
3.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및 과태료 부과	243
가.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243
나. 과태료 부과	244
다. 유권해석 사례	246
4. 과태료 부과 취소	247
5. 양벌규정	249
가.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249
나.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250
1) 면책사유	250
2)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251

APPENDIX

부 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6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PART I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제정취지

PART I

추진배경 및 추진성과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추진배경

가. 헌법적 가치의 실현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출
 - ※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
- '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
 -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따른 부패예방 전담기구로서 위 협약에 규정된 부패방지 정책의 시행,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등의 기능을 전담
- 청탁금지법도 부패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배경 하에 추진

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 －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공직사회의 부패실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의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

구분		2015	2016
응답 비율	일반국민	57.8%	51.6%
	공직자	3.4%	4.6%

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 '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3점, 176개국 중 52위로 저조
 - ※ 우리나라 CPI 지수 : '17년 54점/51위 ⇒ '18년 57점/45위 ⇒ '19년 59점/39위 ⇒ '20년 61점/33위
'21년 62점/32위 ⇒ '22년 63점/31위
 - － 인식(perception)을 측정하는 지수이므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인, 전문가가 우리사회 부패실태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가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
 - －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저해 등으로 연결되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라.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 청탁금지법은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을 축소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
-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음
 -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부패를 정의하면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행위에 대해 개념정의를 하지 않음**
 - (전통적 의미의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
 - (최근의 부패 개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비록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향

마.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및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변화
 -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이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청탁·금품수수 행위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인식
- 다양화·은밀화·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 반부패 법령의 규제 사각지대 보완 필요
 -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 둘 수만 없고 법·제도를 통해 새로운 윤리와 도덕이 자리 잡도록 유도

바.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 부패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부패의 속성과 국민의 기대수준을 고려한 원인 진단 필요
 - 우리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은 뿌리 깊은 청탁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에서 기인
 - ※ '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33.8%), 공무원(46.1%), 기업인(45.1%), 외국인(38.5%)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

- 뿌리 깊은 청탁관행

- 우리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물론 그 외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각종 연줄을 통한 끈끈한 관계맺음으로 구성
-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연줄을 이용한 청탁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할 고질적인 병폐
- 청탁이 만연하는 사회에서는 비공식적 절차와 연줄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이는 곧 상호불신을 초래

- 고질적인 접대문화

- 금품이나 향응은 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원만한 관계유지를 통해 장차 도움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공
- 접대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

2 추진경과

가. 청탁금지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제출까지('11.6월~'13.8월)

- '11.6.14. 국무회의 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안 마련
 - － '11.10.18.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 후,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안 마련
 - － '12.2.21.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 공개, 조문별 토론을 통해 법조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 '12.4월~5월 권역별 법안 설명회(호남권, 충청권, 경상권)를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지자체 공직자, 시민 의견 수렴
 - － '12.4월~7월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 연구'를 실시
- 정부입법절차 진행
 - － '12.5월~8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실시
 - － '12.8.22.~10.2. 대국민 입법예고 실시
 - － '13.2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로 선정
 - － '13.7.30.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 － '13.8.5. 정부 최종안 국회 제출

나. 국회 제출 이후 제정·공포에 이르기까지('13.8월 ~ '15.3월)

- 제출된 정부안은 '14.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국회 논의 본격화
- 정무위원회 6차에 걸친 법안소위 법안심사
※ 법안심사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 '15.1.1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
- '15.3.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의결
- '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제정·공포
- '16.9.28. 시행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기까지



3 제정취지

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

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

참고 1 청탁금지법의 기존 법체계 한계 보완

구분	기존 법체계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형법	-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 -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직자 윤리법	-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 제한만 규율 -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 조항 신설 불가능 -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위임	-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 필요적 징계로 강화 -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부패방지 권익위법	권익위 설치·운영, 부패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참고 2 정부안 및 국회 통과안 비교

구분	정부안(13.8.5.)	통과안(15.3.3.)
법안명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고유한 공공기관	정부안에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인 및 언론사 추가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 ※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 부정청탁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해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화 ※ 인허가, 행정처분·형벌부과 감면, 인사, 계약, 직무상비밀 누설, 보조금, 평가, 감사·단속, 병역 등 14가지 부패빈발분야의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열거 7개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도 구체화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등의 수수는 대가관계가 없어도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등 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 받는 금품등을 제외한 공직자 가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PART II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PART II

적용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1 인적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인사혁신처장이 반기별로 고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등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대상자

1) 공직자등

- 공직자등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
 -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등
 -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음
 -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정무직 공무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을 포함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 판례

2017. 6. 30.에야 인사혁신처고시 2017-4호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2 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이 2016. 10. 12. 외부강의 후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안에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아직 지정 전이라면 공직유관단체가 되지 않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의 문언상 분명하고, 따라서 위반자의 2016. 10. 12.자 위반 사항은 위반자가 아직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해당되기 전의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7.자 2021과30 결정)

-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
 - (교원) 총장, 학장, 교장, 원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
 - * '19.8.1. 시행(고등교육법)
 - (직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학교의 직원에 포함
 -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상임 및 비상임 모두 포함), 직원은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를 의미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13. “언론사 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2) 공무수행사인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 미준용)
 - ※ 청탁금지법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전담기구,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등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 (예시) 「공인회계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 (예시)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등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3) 기타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일반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구체적 사례(적용대상자 관련)

사례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



- 법 적용대상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함
 -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므로 그 교원 A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라. 유권해석 사례

■ 공직자등

Q1_ 공무원 임용유예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험시절 다녔던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임용유예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_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임용유예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국민이 장학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_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유사·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_ (공직유관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_ 공공기관의 자회사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사의 자회사인 ◇◇회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지 모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에서 확인 가능

-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확인 가능

Q4_ 공직유관단체의 무보수 비상임임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데, 협회의 비상임임원은 협회 회원사 중에 선출된 자로 무보수이며, 각자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협회의 비상임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_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임임원은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5_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인 A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_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임원 :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학교법인의 고문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면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음
 -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전문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음

Q6_ 대학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_ 「고등교육법」 상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제17조) 대학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사의 경우 2019. 8. 1.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 대학교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정리

구분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대학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Q7_ 방송사 외주제작사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A_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며, 외주제작사의 임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8_ 인터넷 포털의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위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인터넷 포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9_ 민간기업에서 사외보를 발간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IT기업인 ○○회사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사외보를 발간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잡지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기업은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이 위와 같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외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10_ 외국공무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재무부·중앙은행 소속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3만원 초과 오찬 및 만찬, 5만원 초과 기념품,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국공무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동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Q11_ 사립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는 사립 ○○대학교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동 대학교의 교수는 아니지만 위 대학병원이 소속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_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따라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동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동 대학교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학병원 의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의과대학 교수는 아니며 해당 병원 또는 학교법인·공익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제)

※ 의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서울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 (국립대학교병원 의사)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국립대학교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 (사립대학교병원 의사) 사립대학교 병원이 동 대학교 학교법인 소속인 경우라면, 사립대학교병원 의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 (공익재단 설립 병원) 공익재단이 설립하고 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Q12_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민간기업의 대표 겸 공직유관단체 사외이사)

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_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공무수행사인

Q1_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또는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_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그러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2_ 공공기관의 내규로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_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그러나 별도의 근거 법령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_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장과 직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시중 은행의 은행장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대표자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장과 직원은 청탁 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_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청탁 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외국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같은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같은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보는바,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다만, 외국은행 지점에서 위탁받은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은행법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4_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읍·면 체육회'(○○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든가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5_ 재건축 조합장 등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_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_ 이장 및 통장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이장 및 통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A_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_ 공사 감리업무담당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제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_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Q8_ 공무수행사인의 이중지위(변호사 겸 공무수행사인)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B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_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A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A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사안에서 A가 받은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9_ 관련 법령에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관련 법령에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_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단지 관련 법령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대상이 아닌 자

Q1_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공직유관단체 직원 A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만난 민간기업 직원 B에게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_ 사안에서 금품등(명절선물)을 제공받는 자는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Q2_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직원이 민간기업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반도체 제조업체인 A기업에서 자사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B기업 영업팀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_ 사안에서 금품등(명절선물)을 제공받는 자는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2 장소적 적용범위

가. 입법주의

-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 －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하고,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적용 대상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기국주의)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등과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나. 구체적 사례(속지주의 관련)

사례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PART III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의무

1.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2.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3. 공직자등의 책무

PART III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들은 대부분 공적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
 - － 공적 정책들은 기존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
- 공직자등은 법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국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 － 공직자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여 언제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 특성에 비추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이 매우 중요
 - － 또한,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집행 자세도 중요

2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 국가나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책무

3 공직자등의 책무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되고 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됨
 - － 공직자등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킴
- 국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자등도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노력 필요
 - －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PART IV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의 금지
2. 부정청탁 대상직무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4.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5. 부정청탁의 처리 절차
6. 위반행위에 대한 자세

PART IV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가. 개요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
 - －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이 금품 수수와 결부된 청탁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
- 부정청탁행위란 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다만,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열거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

나.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법 제5조제1항)
- ‘누구든지’는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자연인만 해당하고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는 법인은 제외
 - ※ 형법 제355조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중략〉…**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 － 법인 소속 임직원(자연인)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법 제24조(양벌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1) 부정청탁의 상대방과 범위 확정의 필요성

- 부정청탁이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으므로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법 제21조)

2)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또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

※ 내부 규정에 따라 전결권이 위임된 경우 대외적 명칭은 기관장이고 외부에서는 **전결권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전결권을 위임하였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 표시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 **하급자가 거절한 경우** 지시를 통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급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로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관련 판례 1

피고인이 하급자로부터 특정 직위로 보직을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직근 하급자에게 보직에 대해 알아 볼 것을 지시하였고, 직근 하급자는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해당 하급자가 희망 보직으로 인사발령 되도록 한 것은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벌금 부과(수원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7고합762 결정)

관련 판례 2

위반자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특정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묵인 지시 등을 함으로써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특정 업체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부정청탁 하여 과태료 부과(2017과4)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
 -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까지 포함시킬 경우 신고의무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질 우려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3) 구체적 사례(지휘감독권 있는 상급자의 지시 관련)

사례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정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정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며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제3호)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 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평정권자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

4) 유권해석 사례

Q1_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을 한 경우

A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 하는지요?

A_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A기자가 B과장을 통하여 청탁한 일반 기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탁 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자 B과장이 콘도 예약업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B과장에 대한 부정 청탁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2_ 관내 업체에 가격할인 협조공문 발송행위

○○구는 매회 국기 게양일에 국기 선양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 업체 모집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위치한 업체에 태극기 달기 인증샷 할인요청을 하여 이용주민의 국기 게양률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구민 중 태극기 달기 인증샷 참여자에게 가격 할인을 해 달라고 관내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내 민간업체에게 태극기 인증샷 가격할인 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3_ 부정청탁이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B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후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식당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 B의 선배 C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선배 C는 이를 담당공무원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요청한 A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요?

A_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청탁 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부정청탁의 방법

1) 직접 청탁의 의미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됨
 -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불일치
-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제3자를 통한(위한) 부정청탁의 구분이 중요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인 경우**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2)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

-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이익·불이익)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도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관련 판례 1

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을 부정청탁 (2017과57471)

관련 판례 2

공직유관단체인 B 주식회사의 건설사업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위반자는 자신의 아들이 B 주식회사의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하자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2018과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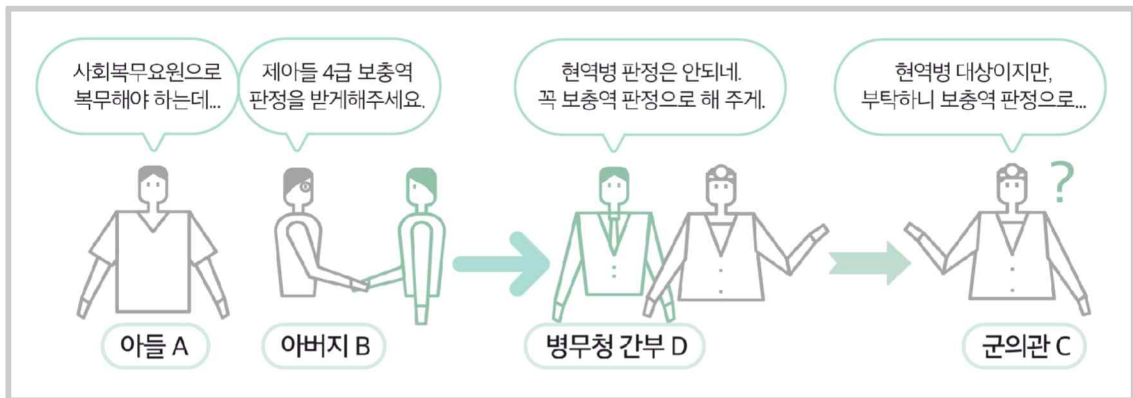
관련 판례 3

위반자는 본인의 아들로부터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동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청 소속 경사에게 본인의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부정청탁(2018과1028)

구체적 사례(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관련)

사례 1

B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음.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의 군의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한 경우



- 병역판정검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제11호)
-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아버지 B가 자녀 A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가 아버지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님
- 병무청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2

B의 어머니 A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아들 B는 어머니 A가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인정 담당 공무원 C에게 자신의 어머니 A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A 모르게 청탁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
-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아들 B는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들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어머니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청탁 동기·목적, 청탁의 수단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법 제5조제2항제7호)
- 담당공무원 C는 아들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
- 담당공무원 C가 아들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어머니 A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

-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한 부정청탁이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가 문제
-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 소속 임직원(대표권 있는 자를 포함)의 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 대표권 있는 임직원의 대표권에 부정청탁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종업원의 부정청탁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의제 불가
 - ※ 범죄행위의 경우 법인의 기관인 임직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
 -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청탁을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으로 보는 경우 법인은 언제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법취지가 몰각

■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서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사업주인 법인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 법인 자체는 실제 위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지만,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도 제재 가능
 - －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위자와 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특별규정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종업원) 부정청탁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 (법인)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

■ 구체적 사례(법인 소속 임직원의 부정청탁 관련)

사례

○○건설(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
-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으로 그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직원 A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주)는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마.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1) 법령을 위반하여

■ 법령의 범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바75 결정).

－ 또한, 조례·규칙도 포함(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662·673(병합))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령위반행위가 부정청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이에 더하여 조례·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법령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 － 또한,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
- ※ 예시 :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각종 사업인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등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음
- 비례원칙, 신의성실 원칙 등과 같은 일반 법원칙은 개별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 － 법령의 매개 없이 일반 법원칙이 바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1

위반자들은 정교사 채용시험에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교과별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들에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의 채택 또는 심사기준의 변경을 부탁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 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현행 제10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들의 위와 같은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2017과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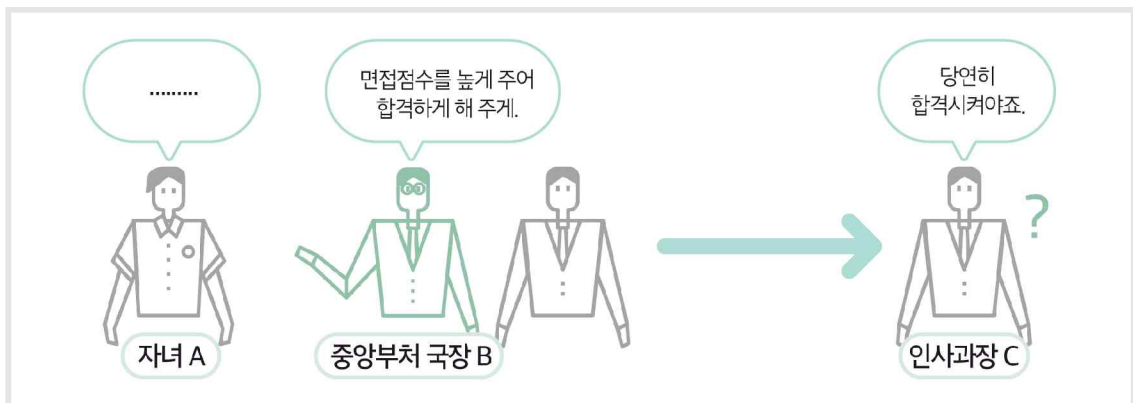
관련 판례 2

위반자가 2017. 7. 초순경 B시청 앞마당에서 인사담당관 C에게 7월 인사에서 D를 B시청 도시개발과 산단재생팀장으로, E를 B시청 도시개발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제3자인 D를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되고'라고 판시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도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판시(2018과157)

구체적 사례(법령의 범위 관련)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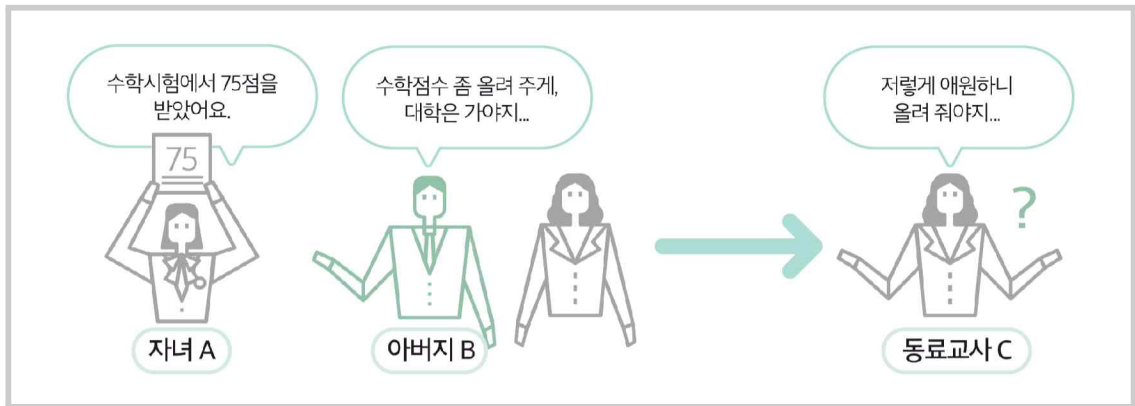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3호)
-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
 -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 지방공무원법
 -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무원 행동강령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국장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 국장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 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2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 몰래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준 경우



-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제10호)
-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
 -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법령 위반도 포함
 -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 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동료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3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후,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청탁에 해당
 -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위반은 법령 위반에 해당
 - 위 고시상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의 오수처리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별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 산정식	비고
3	판매 및 영업 시설	음 식 점	일반 음식점	70L/m ²	550	중식	N=0.175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 민원인 A는 오수처리시설 신고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 결정의 투명성 확보
- 친구 B는 제3자인 민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공무원 C가 친구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공무원 C가 친구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과 관련한 부정청탁행위(제7호)의 경우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
 - － ‘계약 관련’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이상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여 해석 필요
 - － 국가계약법 등과 같이 계약만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외에 개별 법령에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
 - ※ (예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
- 나아가, 공무원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법령 및 절차법도 포함

관련 판례

위반자는 B군의원이고, 유한회사 C는 위반자와 배우자가 자본금 총액의 90%를 소유한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B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위반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D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군 경리팀장 G에게 ‘C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2018과 2)

■ 유권해석 사례(법령 위반 관련)

Q1_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례적 행위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고객현장 등)에 따라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대상자가 될 경우 ‘잘 부탁한다’고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_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에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_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우선 구매 요청 행위

저는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 구매담당자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_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조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형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등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 (정당한 업무행위)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 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 708판결)
-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용자승인을 위한 기술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A(은행 대리)나 관련자금의 대출을 위한 기성고 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B(은행 대리)의 각 업무에 관하여 잘 처리해 주는 등 각자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대법원 1980.4.8. 선고 79도3108판결)

2)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의 및 판단기준

-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요건으로 규정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
 -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
- 판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거래의 상황, 거래자의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 구체적 사례(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관련)

사례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입원 관련 직무는 공공기관인 국립대학교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이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사용·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
-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A가 우선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부정청탁 대상직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가.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률상 열거된 행위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
- (인가)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 설립인가 등
-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위
 - ※ 「건축법」상 건축허가,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허가,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점용허가 등
- (면허)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처분 내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것
 - ※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 등 개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각종 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각종 사업면허 등
- (특허)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실정법상 면허·허가 등)
 - ※ 특허기업의 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권·어업권, 「약사법」상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관세법」상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등
- (승인) 인가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로 예컨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이에 해당
 - ※ 건설·건축 부문에서의 개발관련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산업·경영 분야에서의 사업·공사계획 승인, 안전과 관련한 형식 승인 등
- (검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시설물·기기 등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
 - ※ 품질·기기·시설물·수질 등 안전성 확보 검사,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설 준공 후 검사

- (검정¹⁾) 교원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 검정,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과 같이 인적 능력을 확인하는 경우를 위해 주로 규정
- (시험) 자재 등 물품 등의 적격시험, 농약 등 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 기타 질병관리본부·국립 환경과학원 등 각종 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의뢰 등
- (인증)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행위
※ 인증은 크게 품질·기술 등 인증, 기업·사업장 인증, 사업자 인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확인)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 당선인 결정, 교과서검인정, 소득금액의 결정, 무효등확인심판의 재결,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등

나.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제1호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
- (조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이나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민·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재화
※ 국 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 등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등
-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그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
※ 특정 공익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하천법」, 「항만법」), 특정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도로법」, 「하천법」, 「하수도법」), 손괴자 부담금(「도로법」, 「항만법」) 등

1) 검정은 검사제도와 유사하고, 현행법상으로도 검사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어능력의 검정, 한국사능력의 검정, 교과서 검정, 자격 검정처럼 시설물이나 기기의 성능이 아닌 인적(人的)인 능력이나 인문학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질서벌을 의미
 -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과태료), 민사상 과태료(「민법」상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변호사법」상 과태료)
-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이행강제금)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 불이행 시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
 -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강제금, 토지(시설) 이용 행위에 대한 강제금, 금융자산 처분에 대한 강제금 등
- (범칙금)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특별한 과형절차(통고처분절차)
 - ※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등
- (징계) 민간 자격소지자에 대한 징계, 초·중고·대학 학생 및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 국가 위탁사무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일반회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 등

다.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뿐만 아니라 징계·보직·임명·시험·전출·전입·평가 등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및 공직자등이 행하는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

구분	주요 내용
채용	공무원등의 채용관련 응시자격, 채용절차, 후보자 추천, 채용권자 등을 규정
승진	승진임용 예정인원, 승진 자격, 근무평정, 특별승진 심사 절차 등을 규정
전보	전보제한 사항, 전보절차, 배치기준, 인사교류, 파견, 겸직 제한 등을 규정
징계	징계 사유, 절차, 직권 면직 요건, 징계권자, 소청 제도 등을 규정
시험	임용과 승진 시험의 시험과목, 실시 방법, 시험 면제, 합격 결정 등을 규정

관련 판례 1

위반자들은 정교사 채용 시험 관련 교과별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들에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의 채택 또는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2017과101)

관련 판례 2

위반자들은 2017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2018과1566)

관련 판례 3

위반자는 2018. 11. 1.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D를 위하여 공직자인 B대학교 C여학원장 E에게 D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하여 과태료 부과(2021과55)

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 (심의·의결·조정 위원회) 심의·의결과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의미
 -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위원회 및 중요정책 결정 등과 관련한 심의·의결 성격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 － 지자체의 경우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결 등), 기금관리위원회, 위임·위탁기관의 경우 수탁사무에 대한 심의적 성격의 기구
 -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해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가능

각종 위원회 현황	
구분	설치기구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 (국무총리)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 (중앙행정기관) 증권선물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무역위원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공직유관단체	•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진로심사평가위원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등
위임위탁기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조정 관련 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 관련 위원회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등

- (시험·선발 위원) 각종 국가자격시험 위원 또는 제5호의 각종 공공기관의 수상·포상·우수기관·우수자 등의 선발위원 선정 업무
 - ※ 공무원 임용시험 위원,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위원회 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위원, 공인회계사·변호사·행정사 등 시험위원, 시도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 등

마.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표창, 유공자 선정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 모두 포함
- (수상) 지자체 조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 전국과학전람규칙(수상작품 시상), 올림픽기장령(올림픽기장 수여), 문화예술진흥법(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시상),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업적이 현저한 자 시상),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문화상 시상)

- (포상) 포상은 크게 산업분야, 체육·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처별로 다양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
 ※ 지자체의 경우 주민 중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부여하는 상(시민상, 군민상, 구민상, 의회상)이 많고, 농업·어업·축산 등 각 분야의 개인·단체 대상 포상이 많으며, 교육 분야는 장학·선발이 많음
- (선정) 대부분 우수기업 등을 발굴·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관계로 대부분 산업분야에 치중
- (선발) 대부분이 장학관련 분야이고 기업분야 우수자 선발·지원, 임업후계자 지원 등이 있음

바.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
 ※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 「형법」 제127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 종합 등과 평가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소속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입찰결과와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 발생,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 (입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입찰 관련 예정가격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지방계약법」 제8조
- (경매)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하는 경매(공경매)와 사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경매(사경매)가 있음

－ 자산관리공사법 제25조제3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경영관리위원회 위원
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

※ 사경매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율됨

- (개발) 국토개발, 각종 공사에 대해 ‘개발’의 경우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금융정보 등의 제공 관련 정보 누설 금지, 「항만
공사법」상 비밀누설 금지 등
- (군사) 각종 법령에서 군사상 비밀유지, 군사작전 보호 등의 기밀 유지의무를 부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징발법 등
- (특허) 특허청의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보호, 발명진흥 등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의무 부과
- (시험) 각종 자격검정·국가기술자격 시험과 관련 비밀 유지 의무 부과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상 임직원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 (과세) 과세와 관련한 금융정보 보호 등 필요에 따라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
※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에서 비밀유지 의무 부과

사.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 다른 부정청탁행위 유형과 달리 ‘계약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방위사업법」상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계약 및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상 학교급식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복구 관련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등

관련 판례

위반자는 (주)○○랜드의 호텔 기프트샵에 입점할 물품공급을 위한 D계약과 관련하여 (주)G, K, P를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담당 평가위원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부정청탁하여 과태료
부과됨(2021과32)

아.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 민간이전(보조금)의 종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 (장려금) 취업·고용 장려금, 연구·개발 장려금, 정책적 장려를 위한 장려금 등이 있음
 - ※ 「고용보험법」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인사법」상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장려금
 - － 지자체의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 등이 있음
- (출연·출자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 (교부금)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 －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음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 － 그외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지도 담당 단체에 교부금 지급 등이 있음
- (기금)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관련 판례

위반자는 2020. 9.경 B 회사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D에게 E방진망 시공 사업을 청탁하고, B 회사 이사 F와 함께 G시 동장, 분회장 등을 만나 주민참여예산으로 E 방진망 필터 교체·시공 사업을 신청하도록 한 후, G시 ○○구청 팀장에게 연락하여 팩스번호를 물어봐 B회사가 해당 사업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됨(2021과43)

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를 요건으로 하는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
- (매각) 정부재산 매각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고, 간척지·공적자금 등 정부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매각, 기타 장기 보관 물품에 대한 매각 등이 있음
 - ※ 「국유재산법」상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 「국민연금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매각, 「공익신탁법」상 장기간 보관 공탁물품 매각 등
- (교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국유재산법」상 토지·건물 등의 정착물, 동산 교환, 「공익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교환, 「소하천정비법」상 폐천부지 등의 교환 등
- (사용) 국·공유재산 사용,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기타 주파수 공동사용 등
- (수익) 법률로 설립한 공제회·재단·연구원·단체·시설 등의 수익사업, 선수권대회나 국제대회 등과 관련한 회장 등 수익사업,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등
- (점유) 무단점유 금지, 무단점유 시 무단점용료·변상금 부과 등

관련 판례 1

위반자는 2016. 11. 22.경 ○○교육청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교육청 B수련원장에게, 2016. 11.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천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B수련원 C분원의 객실 1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과태료 부과됨(2018과 966)

관련 판례 2

위반자는 C 등 부대 간부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어린이집 입소를 빨리 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원장인 F에게 청탁하여 자신의 아이와 부대간부 4명의 아이를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입소시켜 과태료 부과됨(2022과119)

차.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
- (입학)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 학생선발방법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재입학 및 소외·취약계층 입학 우대 등의 업무도 포함
 - － 입학자격이 없는 자를 입학시키거나 학생선발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입학·편입학·전입학 시키거나 선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
-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채용 제한사항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규정 존재
 - － 한편,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
 -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관련 판례

위반자는 2018. 2. 경부터 2018. 9.경까지 C 대학교의 출석부 관리 담당자 또는 조교에게 제3자의 결석을 지각으로 바꾸는 등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부정청탁하여 과태료 부과됨(2019과19)

카.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징병검사의 판정기준, 병역면제, 징병검사·입영기일 연기 등
- (부대배속)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 (보직부여) 「군인사법」 장교의 보직 및 해임, 「병역법」상 병력동원 소집의 후순위 조정 등

타.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평가) 민간부문 또는 공공기관 대상 평가, 자산가치 평가 등
 - － 민간부문 평가를 통한 시장질서 형성,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 지원, 배상·보상 관련 평가, 등급 부여 평가 등
 - － 공공부문 대상 평가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의 효과성 검증, 지원 수준 결정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
 -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원 평가, 「산재보험보상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과학기술기초법」상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지가 산정평가 등
- (판정) 등급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정, 각종 시험·검사의 합격여부 판정, 기타 행정적 차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판정으로 나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여부 판정, 「도로법」상 매수대상토지의 판정, 「감사원법」상 변상책임의 판정 등
- (인정) 성능 인정, 공로의 인정, 실무 경력의 인정 등 국가 등이 특정한 사실관계 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 ※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군인 재해보상법」 제2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인정 등

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관리 지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이행 및 조리사·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 (단속) 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 도로교통 분야에서의 단속 등
 -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 「건축법」상 건축종인 건축물의 위법시공 단속,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단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미분류 게임물「등급거부 게임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
- (조사) 법령 준수 또는 위반행위의 확인,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 법령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조사 등
 -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실태조사 등
- (감사) 국회·감사원·행정기관 등의 감사 등
 - ※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 그 외 행정기관 자체 감사 등

관련 판례

위반자는 2018. 6. 18. 20:10경 ○○경찰서 풍속 단속 담당자인 A와 통화하면서 유흥업소 B 단속과 관련 '미성년자 고용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목적 외 취업활동)은 차후 단속하는 것이 어떨겠냐'라고 하여 경찰관의 단속 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2021과4)

하.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의 직무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와 그의 가족의 연락을 주선하는 행위는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와는 그

성질을 완전히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합125 판결)이 있음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개정('22. 6. 8. 시행)하여 추가

-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부터 수사 종료에 해당하는 종결처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들을 포함
 -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강제처분(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 수사종결처분의 경우도 포함
- (재판) 각급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재판, 군사법원의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을 포함
 -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판사, 군판사뿐만 아니라 재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관, 법원직원, 배심원의 직무를 포함
- (심판)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소청제도 등)으로 구분
- (결정) 수사·재판·심판 등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준사법적인 각종 결정을 의미
 -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석방 적격결정 등
- (조정·중재)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 ※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형사조정 등
- (화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
 - ※ 「민사소송법」상 제소전 화해, 「중재법」상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의 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보호조치 관련 화해 등

관련 판례

위반자는 2018. 5. 29. 화장품 특수절도사건 피의자 C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수사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5. 29.부터 같은 해 7. 6.까지 위 사건의 수사 담당 팀장(경찰공무원 D)에게 피의자 조사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통화 4회, 문자발송 2회를 하는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됨(2021과3)

거. 유권해석 사례

Q1_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 금품등 수수는 없다고 전제함

A_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Q2_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공공기관의 근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에 참여하여 성실히 근무 완료한 학생에게 기관 혹은 부서 차원의 추천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1. 해당 학생의 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증명 및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또는 기관 명의로 추천서 발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2.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일 경우, 추천서가 제공되는 제출처가 민간기업인지,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인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나요?

A_ (질의1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인턴 등에 대해 부서 또는 기관 명의로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추천서 제출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제3호의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공직자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 관계자에 대한 추천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3_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퇴직예정자가 상훈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퇴직포상에 대한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1. ○○시에서 퇴직예정인 주사 A가 본인에게 추천 제한 사유가 있어 상훈 관련 법령상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상훈담당계장 B에게 부탁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이 위 주사 A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에게 부탁하는 경우

A_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포상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1 관련)

주사 A가 상훈담당계장 B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것입니다(법 제21조).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질의2 관련)

지역주민은 제3자인 주사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법 제23조제2항),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Q4_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섬유 관련 사업자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자 A는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의 친구인 변리사 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리사 C는 담당공무원 B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담당공무원 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_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C)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변리사 C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C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Q5_ 계약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A를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이 청탁내용에 따라 A가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_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Q6_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민 또는 특정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 반영을 예산 편성 부처의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A_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는 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가 아니라,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을 할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7_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직무관련자인 공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 또는 공공기관 소속 콘도형 연수원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_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골프장 및 콘도 예약 편의도 금품등에 해당되어, 이를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사안과 달리, 민간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한 청탁이 아니므로 부정청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8_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잘 써 달라’거나 ‘학생부를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 또는 ‘학생이 작성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A_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9_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관련 부정청탁(제11호)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장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_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B가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익관 C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익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언·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언·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가. 개요

- 법 제5조제1항은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 법 제5조제2항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7가지 경우를 열거
 -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7호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제1항의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있다.

나.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국민과 공공기관이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명문화한 것임
- 공직자등이 민원인과의 상담을 기피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위축될 우려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은 내부 기준으로 공직자등과 민원인의 의사소통 채널 또는 시스템 구축 가능
 - ※ 지정된 민원실 등 투명한 물리적 장소의 제공과 면담 일시와 면담내용 등의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한 면담 시스템 구축 필요
- 제1호의 예외사유가 형식적 요건(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 외에 실질적 요건(적법한 내용)도 구비하여야 하는지 문제
 - 즉, 형식적 요건(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만 구비하면 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내용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
 -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경우 명문으로 규정한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외에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
 - 형식적요건을구비한이상 요구 내용이 부정청탁을 포함하여 적법하지 않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 가능
 - ※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요구,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으로 규정하여 내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
 - 기존 법령이 충분한 권익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일지라도 주장·요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다만,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한 후 이와 별도로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르지 않고 당초 요구 내용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 부정청탁은 밀행성(密行性)이 전제되므로 밀행적 요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규정
 - －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행위 상황의 공개성 확보)
-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되므로 요구를 하는 자와 공직자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장치로 작용
 - －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통제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합리적인 결론 도출도 가능
- ‘공개적으로’는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 ※ 예시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 형식적 요건(‘공개적으로’ 요구)을 갖춘 이상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 없이 예외사유에 해당
 - － 제2호의 예외사유는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 요건(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

라.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 제3호는 주체(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목적(공익적 목적), 행위대상(고충민원 등), 행위(전달)의 제한을 받는 예외사유
- (주체) 예외사유의 주체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문제
 - － 다른 예외사유와 달리 주체를 규정한 입법취지 및 예시된 주체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범위 설정 필요
 - － “등”에는 예시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
 - ※ 그 외 단체나 개인 등은 다른 예외 사유(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요구, 공개적으로 요구, 사회상규 등)의 적용 가능
 - － 각종 협회 등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주체에 포함될 수 있음
 - － 목적(공익적 목적), 행위(전달행위) 등의 요건 상 제한이 있으므로 시민단체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음

-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직원·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

- (목적)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음

-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음

- (대상) 전달의 대상이 되는 고충민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등을 의미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그 외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것도 포함

- (행위)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보충하여 전달하는 것도 포함

- 전달·보충을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에 해당

마.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또는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도 예외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증명, 질의·상담형식을 통한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의 설명·해석 요구도 예외로 명시

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 15가지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시되는 행위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
 - 어느 정도의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불확정개념 사용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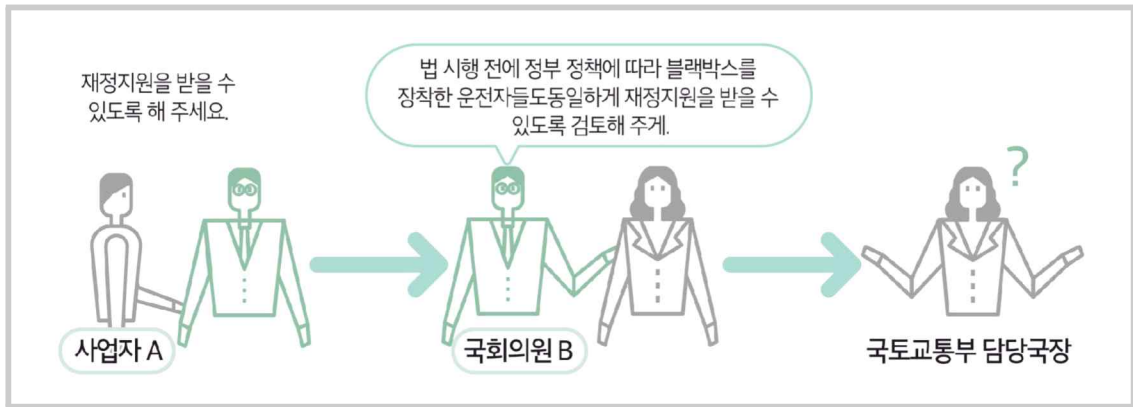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7호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제1항의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있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 ※ '사회상규'는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20조, 언론중재법 제5조 등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음
- 청탁 동기·목적, 청탁 내용,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사. 구체적 사례(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관련)

사례 1 (공익적 목적이 긍정되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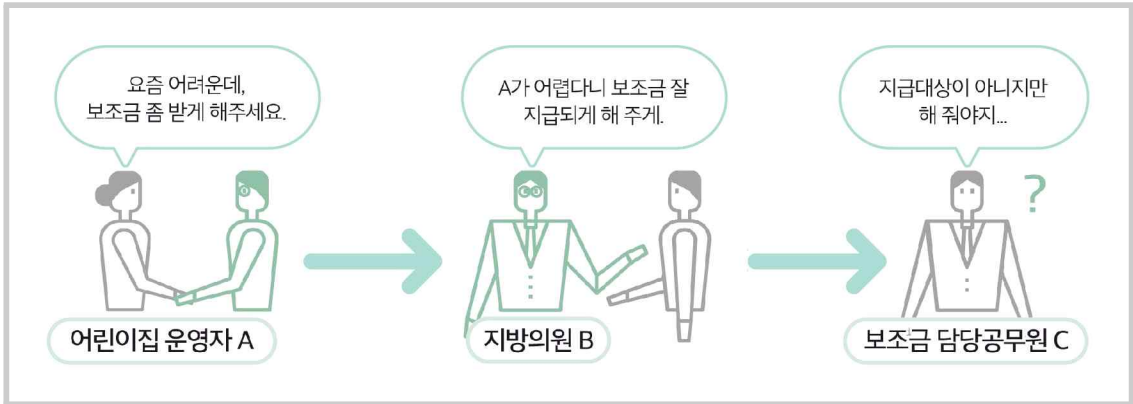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음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한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사례 2 (공익적 목적이 부정되는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배정·지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보조금·장려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예치 등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였으므로 주체, 대상, 행위 요건은 구비
 -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아. 유권해석 사례

Q1_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게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_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는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게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가 동 예외사유에 해당

Q2_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공개적으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SNS 등에 ‘특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해 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A_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됩니다.

SNS에 게시함으로써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5조제2항제2호)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할 경우는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별도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3_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_ 건축법령상의 건물 증축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제5조제1항제1호의 ‘인가·허가·면허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증축허가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문의를 한 것이라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른 직무수행이 금지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국장,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전결권을 위임한 공직자등 (예 : 기관장)도 포함

※ 내부 규정에 따라 전결권이 위임된 경우에도 **대외적 명칭은 기관장이고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전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가 거절한 경우** 지시를 통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급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로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부정청탁을 받은 하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결재권자가 전혀 알지 못한 경우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 불가(청탁금지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 과실범으로 처벌도 불가)

※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한편,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
 -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의무적 징계대상에 해당

5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화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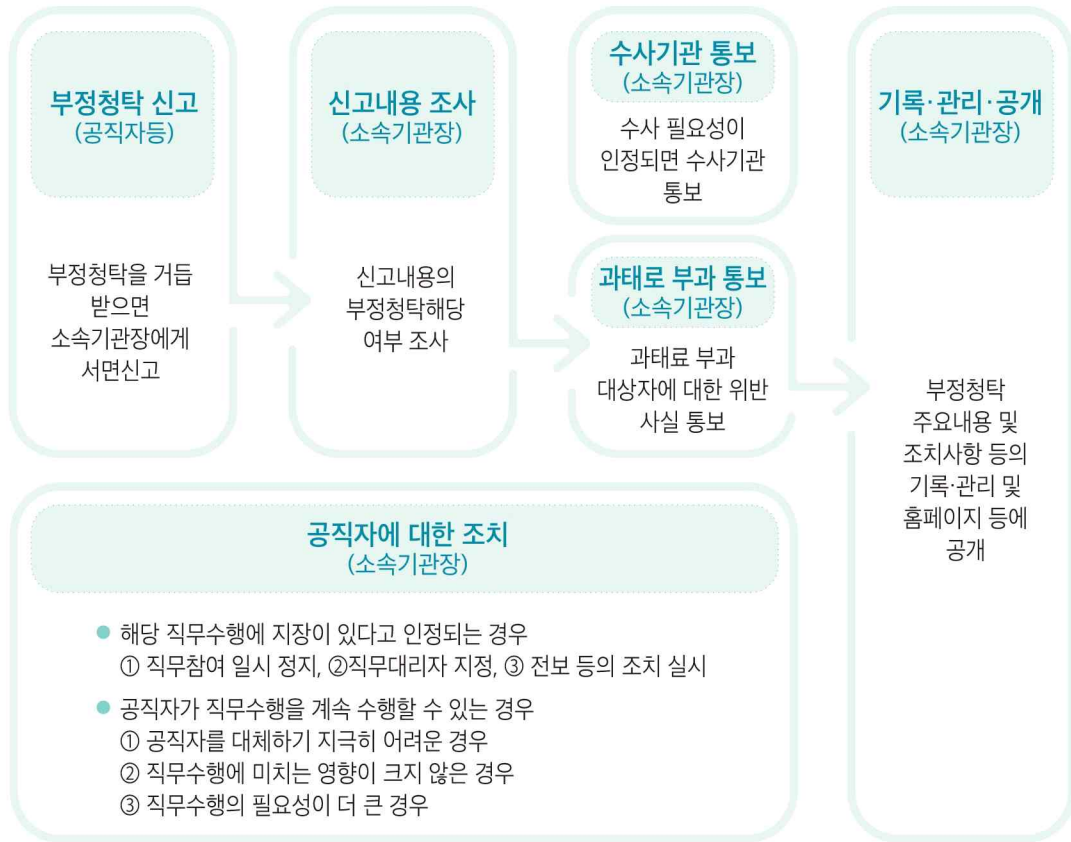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청탁 신고 처리 절차



가.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1차)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거절의무를 부과(법 제7조제1항)
-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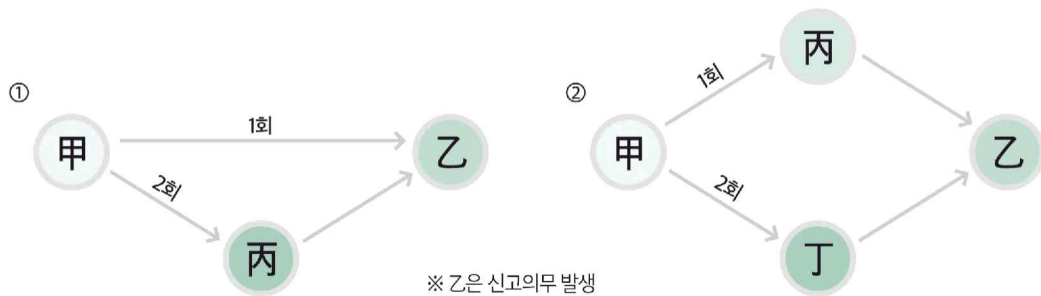
나. 부정청탁의 신고(2차)

1)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

■ 동일한 부정청탁의 판단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법 제7조제2항)
 -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동일한 부정청탁의 범위를 공직자등의 입장에서 설정
-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다시 한 경우, 2회에 걸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동일한 부정청탁(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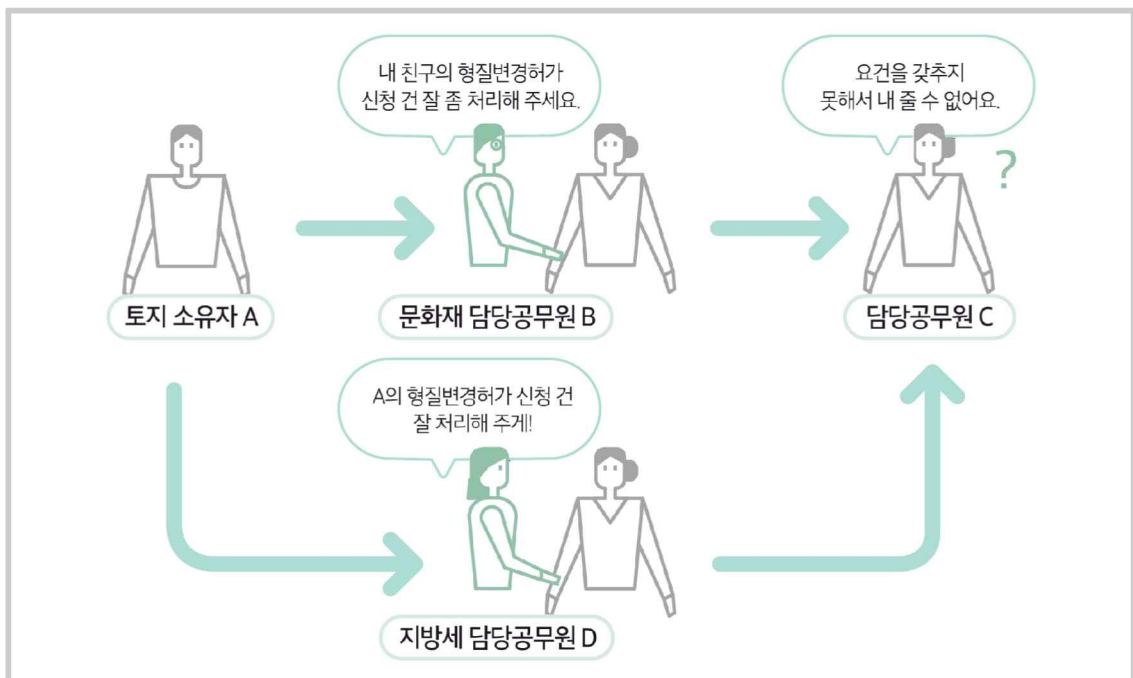


-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 구체적 사례(동일한 부정청탁 관련)

사례 1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군청 문화재 담당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군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 B와 D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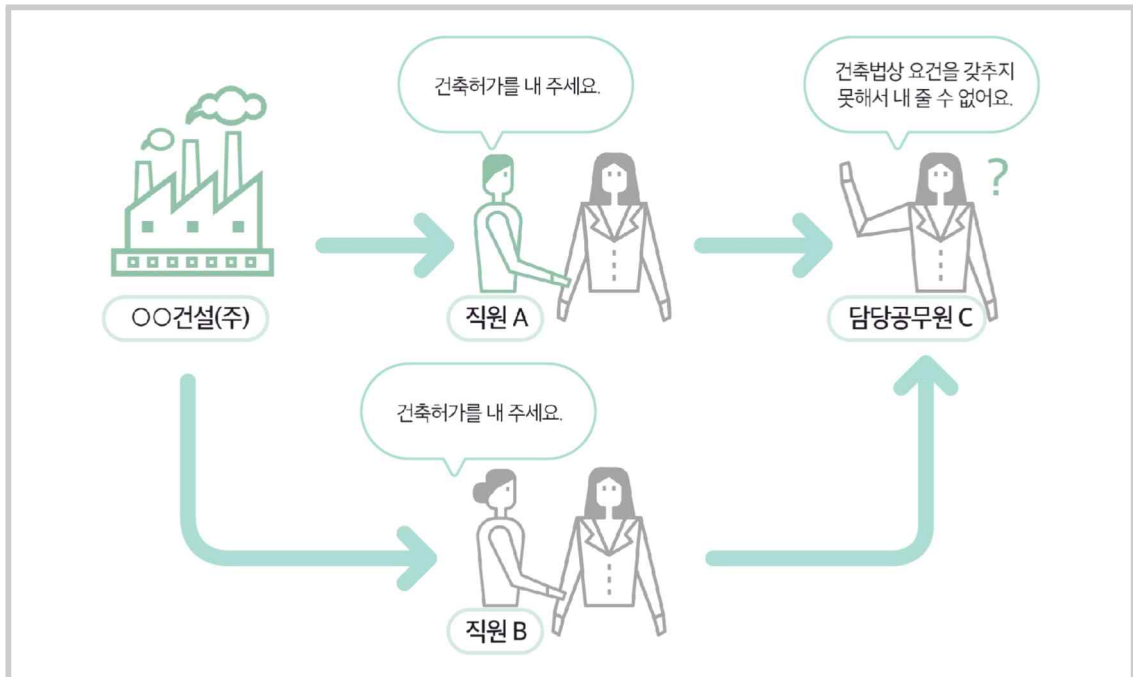
-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담당공무원 C는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담당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

－ 담당공무원 C가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2

〇〇건설(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그 다음 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공무원 C에게 한 경우



-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
 -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의 발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 C는 최초 직원 A의 부정청탁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C는 직원 B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직원 A와 B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그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법인을 위한 것으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건설(주)는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2) 신고 방법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
 -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및 내용 등
- 신고는 소속기관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필요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1) 조치의 내용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전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을 차단
-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외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상 조치 내용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 법률에 규정된 조치 중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 배제 정도가 일시적이나, ‘전보’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

2)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 소속기관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다만,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필요

구분	조치내용	내용
조치 필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자를 변경하거나 직무참여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참여 일시중지	●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직무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사무분장의 변경	● 전보 등 보직의 변경 없이 과내에서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경우
	전보	●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보직 변경을 의미
조치 불필요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1) 공개 여부의 결정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를 통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가능
 - 과태료 부과 또는 유죄판결 등을 받았는지 여부,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 (공개범위)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 사항만이 공개대상
 - 부정청탁자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므로 공개 불가
 - 공개대상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공개범위를 위임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인적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 불가
 - ※ 「변호사법」은 공개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적사항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개방법) 국민의 접근성과 부정청탁 예방효과의 강화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 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징계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
- 공직자등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 자신을 위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임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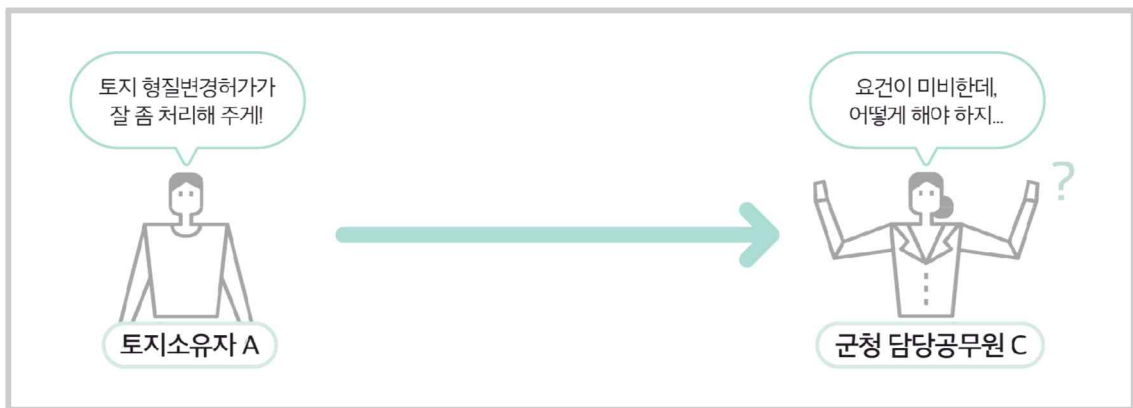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구성 요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인(私人)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법 제23조제7항)하면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부과
※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212 이하 참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

다. 구체적 사례(직접 청탁 관련)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 ※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금지대상에는 해당함**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
- 담당공무원 C는 토지소유자 A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므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공무원 C가 토지소유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라. 유권해석 사례

Q1_ 부정청탁 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 A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들 성적을 몰래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_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 A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2_ 단속 공무원의 위반사실 묵인

시·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단속공무원이 위반사실을 묵인했다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_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V PART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수수 금지 금품등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PART V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수수 금지 금품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 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외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접대문화의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
 - 사회통념상 적지 않은 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 적당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관련성을 내포
 -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형법」 상 뇌물죄와는 달리 입증부담이 완화
- 「공직선거법」도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분

구체적 사례

사례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음.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직무관련자 B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 공무원 A는 직무관련자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관련자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공무원 A와 직무관련자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움

참고

공직선거법(100만원 기준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구분 입법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 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2)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 상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
 - ※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

■ 구체적 사례

사례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나. '동일인'과 '1회'

1) 개요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동일인'과 '1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 금품등 수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존 「형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

※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동일인

■ 의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판례는 처벌대상이 되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판단
 - ※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 등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에 위배된다(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 또한,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
 - 금품등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 가능
 - ※ 동일인은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범죄행위능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법인은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있는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은 제외
 - ※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에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는 것과의 통일적 해석 필요**
 -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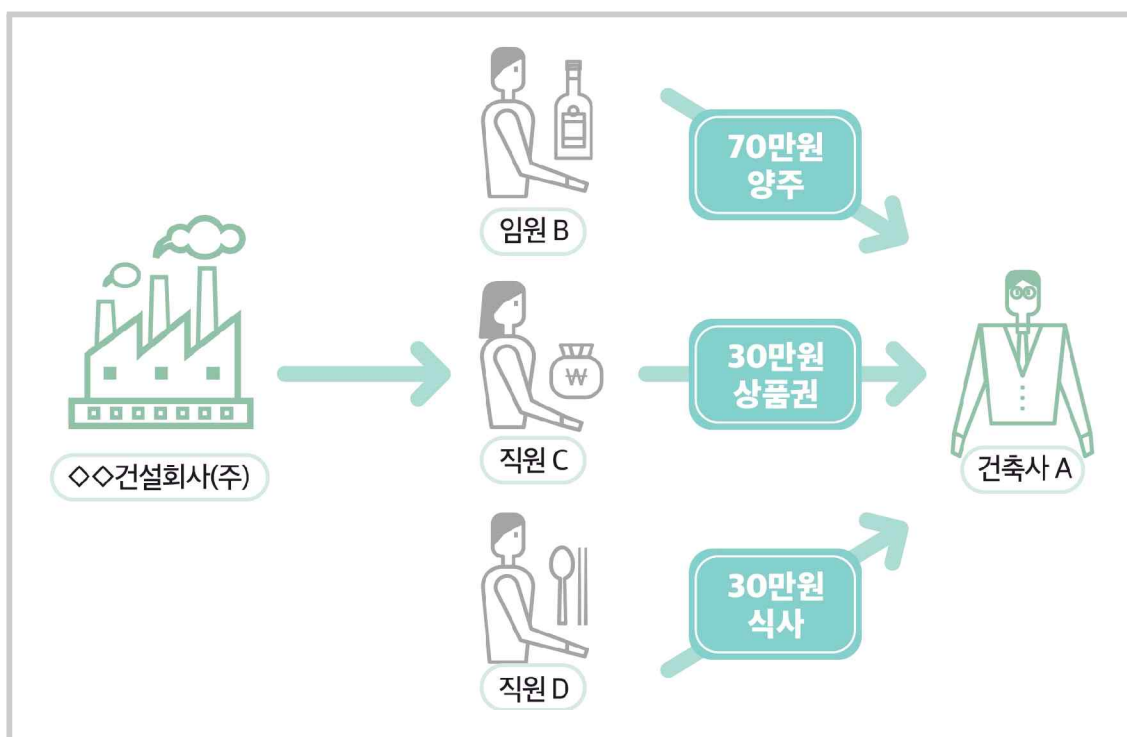
관련 판례

이장협의회 회장인 위반자 B는 ○○시 D읍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청으로 발령받은 C를 비롯한 전출 직원 송별행사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위반자 B는 이장협의회 명의로 위반자 C에게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한 사례에서, 위반자 C는 위 300,000원을 이장협의회 회원수(71명)로 나누어 1인당 4,225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17과21)

구체적 사례(동일인 관련)

사례

○○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A에게 ◇◇건설회사(주)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 건축사 A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건축사 A는 ◇◇건설회사(주)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금품등(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상품권, 30만원 상당 식사의 합계)을 받았음
 - 건축사 A는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건설회사(주)임
- 건축사 A가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대상 처리라는 목적의 관련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건축사 A는 ◇◇건설회사(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임직원 B, C, D는 건축사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각각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 다만, 임직원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음
 - ※ 형법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 ◇◇건설회사(주)도 임직원 B, C, D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 임직원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여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건설회사(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 다만,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 유권해석 사례(동일인 관련)

Q_ ‘동일인’의 의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에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기관명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기관의 지역사무소에서도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공에 따른 비용은 기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예) 동일한 기관 공식행사에 ○○협회장 명의로 화환 제공 후 ○○협회 ◇◇지역사무소에서도 화환 제공

A_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하 ‘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또는 경조사비(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명의를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3) 1회

■ 의미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지, 법적인 의미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지 문제
 - 수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조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수 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 구체적 사례(1회 관련)

사례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 과장 A와 사무소장 B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주류, 합계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
 -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식사 접대행위와 주류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
- 대표 C는 과장 A와 사무소장 B에게 각각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 ◇◇회계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처벌(벌금) 대상

■ 유권해석 사례(1회 관련)

Q_ ‘1회’의 의미

○○언론사 직원과 업무 관련 협의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3일 후 다시 만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각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넘지는 않으나 합산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상 1회의 제공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시간적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일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로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식사·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두 행위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회계연도

■ 의미

- 회계연도는 문언상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
-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
 - － 제공자의 경우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 연도를 적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
 -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
 - －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
 - ※ 법상 학교의 회계연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 구체적 사례

사례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1월부터 4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
- ※ 공무원 A와 세무사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라.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1)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규정의 내용

- 금품등 수수 금지 등 규정에서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여부가 결정되거나 신고의무가 발생
 - －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신고의무도 발생
 -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이를 알게 된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제재대상
 - － (외부강의등)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고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 초과사례금 수수행위마다 별개의 과태료 부과 요청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조항
금품등 수수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2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4항
외부 강의등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제10조제1항

2) 다른 법령상의 직무관련성

- (형법)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
- ‘직무에 관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甲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082 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 4737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등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97도2836)
-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의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열위에 있는 자(소위 甲-乙 관계에 있어서의 乙)를 의미

3)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의미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99도5753)
-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관련 판례 1

뇌물죄에서의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346 판결 등) 위 법리의 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2019과11061)

관련 판례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2016과 527)

관련 판례 3

위반자 A는 C경찰서의 교통관리계장으로서 신호등제어기의 설치 위치의 지정이나 신호등제어기의 조작, 신호등 고장시 수리를 위한 교통통제 등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교통신호 제어기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담당하는 소관청이 C경찰서가 아닌 D시청이고, 경찰공무원이 그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통신호 제어기 관리업체에 대한 위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2021과 29)

■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 － 법령상 일반적·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이면 충분하고 현실적·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음(일반적 직무권한 이론)
 - － 지휘감독자의 소속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공직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포함
- 사실상·관례상 처리하는 직무
 - －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
 - ※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관리 직무
 - －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사실상 처리하는 사무
 - ※ 자기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한 경우, 동료로부터 잠정적으로 사실상의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
 - ※ 판례(예시)
 - 교도관을 보조하여 **사실상 재소자에 대한 간접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교도**가 서신연락이나 담배 반입등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87도1463)
 - 경매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경락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사실상 처리**해 온 경매사건 관여 주사보가 경락 허부 결정 등을 좌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84도2625)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 최종적·독자적 결정권은 없지만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직무
 - ※ 개인택시 면허 결정에 **중간결재자**인 시의 개인택시 면허사무 담당부서 과장이 면허발급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에 따른 세력을 기초로 직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
-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소관 사무에 관해 사실상 의견이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하는 검찰주사가 피의자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다만, 직무권한자의 행위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음
 - ※ 공판참여주사가 형량 감경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양형은 공판참여주사의 일반적 직무도 아니고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도 아님(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관련 판례 1

B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술사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한국근현대사 등을 강의하고 관련 논문을 지도·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반자가 해당 사학과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이 각출하여 구입한 선물을 받은 사례에서, 위반자는 이 사건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심사한 적이 없으며 지도·심사할 예정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생들은 모두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로서 위 대학원 부교수인 위반자로부터 지도·평가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위반자로부터 논문 지도·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그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2018과14)

관련 판례 2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 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에서,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지위에 있었고, 위반자는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시의회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2018과 3)

관련 판례 3

이장협의회(위반자 A) 회장인 위반자 B는 ○○시 D읍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청으로 발령받은 C를 비롯한 전출 직원 송별행사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위반자 B는 이장협의회 명의로 위반자 C에게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한 사례에서, 읍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지방자치법 제119조), 이장협의회는 위반자 C가 읍장으로 있는 D읍의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위와 같은 위반자 A와 위반자 이장협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의 수수가 위반자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2017과 21)

관련 판례 4

○○군에 본점을 두고 교통영향평가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위반자는 2016. 11. 12. ○○군 공무원으로서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건설교통과(도로 교통 부문) 등에 근무하면서 관내 각종 공사계약·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바 있는 D를 비롯하여 E, F와 함께 골프를 치고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사례에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는 ○○군 일대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는 ○○군에서 그 관할의 도로교통 관련 용역계약의 체결과 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더욱이 D는 주식회사 C가 수행한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약 2달 전까지 담당한 바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금품등으로 정해진 골프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2017과 102702)

관련 판례 5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위반자는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 이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는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2017과2)

관련 판례 6

위반자는 C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사실, 위반자가 2016. 10. 5. 16:30경 위 C 계획운영과 사무실 내에서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D 중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위 D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간인인 위반자 본인 및 위반자의 직원들의 군부대 출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D는 위반자에게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위반자 D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려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2016과547)

관련 판례 7

위반자 C는 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구축, 가상환경의 백업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장비업체이고 위반자 A, B는 ○○청의 D 내지 소속 직원으로서 위반자 C의 개발, 판매 하는 상품에 상응하는 ○○청의 전산시스템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점, 위반자 A는 2016. 9. 경 ○○청의 미래발전전략에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미래통관행정의 고도화 방향을 정립, 선진 정보 기술(IT) 적용 트렌드 파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정보기술 발전 동향 수집 등을 목적으로 IT세미나 및 글로벌 IT업체 방문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까지 한 점, 위반자 A는 평소 E과 직원들에게 IT신기술 관련 세미나 참석을 독려하여 왔으며 직원들이 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전체 공지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 소식을 알리기까지 한 점, 위반자 B는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의 형태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반자 A, B가 현실적으로 ○○청의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반자 C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시(2016과527)

관련 판례 8

○○시 B에 있는 C사(사찰) 사무장으로서 2016. 10. 11. 12:00경 문화재 관리를 위해 위 C사에 방문한 ○○문화재단 팀장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는 위 E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2016과407)

관련 판례 9

공직유관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 주식회사의 직원이 위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 단체의 직원들에게 노래방, 음식점에서 음주와 저녁식사 비용 479,164원 상당을 제공한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2017과24)

4) 유권해석 사례

Q1_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와 같이 직군 전체를 직무 범위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범위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가 ‘철도 시설물’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_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히 직군 범위나 소관 업무만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직무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2_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일반 동료 관계)

공무원 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와 공무원 간의 경조사비에도 5만원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A_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3_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공공기관 내 상·하급자)

A국 B부서 상급자(과장)와 C국 D부서 하급자(사무관)를 동료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요?

A_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 내 하급자의 직속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 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Q4_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전출 간 공직자등)

고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가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_ 사안의 경우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금품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 종류

- 금전, 물품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 성(性)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관련 판례 1

위반자는 ○○시 공무원인 B에게 2019.4.11.과 2019.7.21. 2회에 걸쳐 위반자가 대표자로 있는 C가 보유한 D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175,000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할인받도록 하여 금품등을 제공(2020과11738)

관련 판례 2

○○ 시청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위반자는 A에게 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공나루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 정비 용역을 맡기게 되었고, 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자 종중의 묘를 벌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인부 2명으로 하여금 약 3시간가량 위 종중의 묘를 벌초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A가 관리하는 인부 2명이 약 3시간가량 위반자 종중의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위반자에게 인부 2명분의 1/2일 인부임인 15만 원(= 1/2일 인부임 75,000원 × 2인)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위반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2018과1)

2) 가액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 금품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
- (기준시) 행위 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액)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 산정
 -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관련 판례

회원으로 골프비용 등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원 할인 가격이 아닌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통상의 거래가격'이란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격이어야 할 것인바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회원가를 바탕으로 위반자가 F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2018과 100953)

■ 개별적 기준

- (납품·용역 기회) 납품가액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또는 실제 수수 용역대금에서 정당한 용역가액을 공제한 이익
 - ※ 피고인은 정상적인 시가보다 약 10% 정도 비싼 가격에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가격이 정상적인 시가보다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 D가 건축하는 F쇼핑센터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이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그 납품가격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상당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4920 판결).
 - ※ 피고인측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의 실제 용역가치액을 정당한 용역가액으로 본 사례(서울고등 법원 2008. 8. 8. 선고 2008노42 판결)

- (향응) 당사자가 함께 수수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

※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관련 판례

위반자는 당시 위 식당에서 총 22명이 식사를 하였고, 식사대금으로 633,000원이 한 번에 결제되었으므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28,772원으로 3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득이 전체 식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인데, 당시 위 식당의 방에서는 위반자, B시의원, E조합의 조합장 및 간부 16명이, 위 식당 홀에서는 B시의원 수행원들과 E조합의 팀장 및 직원 6명이 따로 식사를 하였고, 방과 홀에서 주문했던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서로 달랐던 점, 위반자는 방에서 주문한 고기와 술을 홀에 있던 사람들도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참석자들의 지위, 방과 홀에서 주문한 음식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당 방에서 식사를 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위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의 식사대금과는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2017과 215)

- (금전 차용)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이고,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임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 취업제공

- (의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대상)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 취업제공을 금지
※ 공직자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의 가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가액산정) 법령·기준상 겸직 허용 여부, 취업 경위, 실제 근무 형태, 약정 급여액, 위반행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정당한 취업제공인 경우 취업제공 및 그에 따라 수령한 급여 등은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법 제8조제3항제3호)

－ 정당한 취업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취업제공 그 자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취업제공의 가액 산정방법(예시)

-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로 환산한 금액**
 -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 노동임금**을 적용하여 월로 환산한 금액
 - 취업을 제공받은 법인등의 유사한 직급 또는 직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연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보급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직종별 월급
- － 다만,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가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감사원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甲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 乙의 취직을 부탁하여 乙에게 일정기간 매월 급여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취업 경위, 실제 근무 형태, 공여자와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乙의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乙이 10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합계 1억 원이 **알선수재액**이라고 한 사례(서울고법 2012. 2. 23. 선고 2011노3252 판결)

3) 유권해석 사례

Q1_ 회원제로 운영되는 숙박 제공의 가액 평가

공무원 A는 공사업체대표자 B에게 국내유명 콘도(1박당 비회원가 60만원 상당) 숙박편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B로부터 콘도 숙박편의를 1박 제공받았습니다.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보유한 무기명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여 회원가 15만원(1박당)으로 선결제 한 후, A가 무상으로 숙박하도록 하였습니다. A가 위 콘도의 비회원인 경우 수수한 금품가액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

A_ 사안과 같이 콘도 무상 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은 편의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콘도 회원권 보유자로서 콘도 내부 기준에 따라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Q2_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각자내기의 경우 가액 평가

중앙부처의 A사무관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B부장, C팀장 3명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 이므로 B부장이 9만원을 결제하였고, 1인당 5만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원 부분은 참석자들이 각자 내기(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_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각자내기(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3_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급자 A와 하급자 B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B가 식사 비용으로 7만원을 부담하였는데 A가 5만원 상당의 와인을 식사 시 제공하였다면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_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가 인정된다면 A는 B로부터 1만원의 음식물을 접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

바. 금지 행위

1) 공직자등의 경우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요구는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대방이 응하였는지는 불문
 - 동일인에 대하여 금품등을 요구·약속한 후 이를 받은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 행위(받는 행위)가 성립

2) 제공자의 경우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제공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함
 - 동일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제공의 의사표시·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행위(제공 행위)가 성립
- 제공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성립 가능

대전지방법원 2017. 3. 10. 자 2016과557 결정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원인 위반자가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교수 A가 지도하는 학부생 B에게 혼자서 섭취하기에는 다소 많은 양인 약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전달한 사안에서,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하는 교수에게 도넛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① 학부생들이 도넛을 먹던 도중 교수가 이를 회수하고 신고한 점, ② 위반자는 학부생들과 이미 친분이 있었던 점, ③ 가액이 2만원 상당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 내에 있는 점, ④ 전달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반자가 학부생을 통해 교수에게 도넛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 ※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에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는 것과의 통일적 해석 필요
 - －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 참고로, 법 제8조제1항의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누구인지의 문제이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3) 공직자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직자등이 이를 받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므로 공직자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가능
 -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관련 판례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에서, ○○시의회의원 12명은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시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여 면책되었으나, 제공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2018과3)

4) 유권해석 사례

Q_ 청탁금지법상 요구의 의미

○○공공기관 직원인 A는 사적 모임의 활동비를 모으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적시하여 관련 기업 등에 '연말 모임 협찬 제안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며 협찬을 '요구'하였고 일부 기업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협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 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요구 하는 경우 동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요구'란 상대방이 응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 (공직자등)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이른 경우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단순한 의례적·사교적 표현까지 모두 요구로 볼 것은 아닌바, 위 사안의 경우 A가 메일로 각 기업 등에 금품등의 협찬을 요청한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1) 개요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과도한 규제 소지의 방지를 위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만을 금지
-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 사실혼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를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제재대상
 - － 판례는 대체로 형사처벌 조항에 있어서 친족관계를 ‘법률상 친족관계’로 해석하고 있음

※ 사실상의 모가 존속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2) 참고 입법례

-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의무를 부과
 - － 또한, 공직자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
 -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참고

3) 구체적 사례(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 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 ①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
- ②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고 신고를 한 경우



①의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따라서 시장 A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대상이 아님

②의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음
 - 시장 A도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시장 A는 형사처벌 대상

③의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였음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대상에서 제외

4) 유권해석 사례

Q1_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_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 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_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우리 회사(민간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선물, 경조사비(30만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A_ 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 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가. 개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집행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고 기존 반부패 법령의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규범이므로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

-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 가능
 - －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어 「형법」 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

나.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제1호의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

다.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한 그 ‘이하’를 의미
 -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 ※ 경조사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
 - － 선물 : 금전, 유가증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상품권, 이하 ‘상품권’을 제외),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가액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으로 설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1)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이하 ‘농수산물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 선물은 15만원

※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 선물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에는 30만원

－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상 제한이 있음**

－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개인적 친분 없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관계의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부정한 금품등 수수로 보기 어려운 행위들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위임조항의 입법취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의 정의에 관한 조항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임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귀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뜻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사례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 가액기준 내라도 목적이 부정된 사례

관련 판례 1

위반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으로,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기로 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은 이를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한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C가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C는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춘천지법 2016. 12. 6. 자 2016과20 결정)

관련 판례 2

막구조물 등 제조업체 A의 종업원인 B가 막구조물 등 직접 생산 여부를 조사 중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생산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은 소포 상자에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를 넣어 보낸 사안에서,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청주지방법원 2017. 1. 20. 자 2016과934 결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2. 29. 자 2016과1366 결정)

관련 판례 3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시가 10,800원)를 제공한 사안에서, 금품등 제공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대구지방법원 2017. 3. 10. 자 2016과3521 결정)

관련 판례 4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에서, 이 사건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품이 비록 추석을 앞두고 제공된 약 5만 원 상당의 식품이기는 하나,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금품은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제공된 점, 이 사건 금품은 ○○시의회가 2018. 8. 23.경 이루어진 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3억 원을 삭감하고 의결한 이후로서 장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8과3)

관련 판례 5

B대학교 ○○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위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과 조교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30,000원 내지 40,000원을 각출하여 3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30,000원 상당의 케이크, 1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구입하여 조교수에게 교부한 사례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허용되는 가액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위반자가 제공한 금액이 위 가액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위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2017과 96)

관련 판례 6

청탁금지법 제8조제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관하여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으므로, 설령 제공되는 금품등이 가액기준 내의 것이라도, 수취에 걸쳐 제공됨으로써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횟수, 빈도, 명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공된 금품등의 대대수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가액기준점위 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직무관련자인 감리원에게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매우 빈번히 금품등을 제공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났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춘천지방법원 2021. 9. 24. 자 2019과1630 결정)

관련 판례 7

○○시 입찰공사건 'C공사'에 낙찰예정자가 적격 심사 중에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관인 공무원에게 39,600원 상당의 빵을 제공한 사건에서, 금품등 제공자에게 7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6. 자 2021과409 결정)

참고 1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사유

국가	관련 내용
미국	1회 20달러(약 2만원), 연간 50달러(약 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일본	5,000엔(약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영국	25파운드~30파운드(약 4~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독일	25유로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외국 입법례

- 미국 :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 공직자는 금지된 출처로부터 또는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 수수를 금지, 1회 20 USD, 연간 50 USD 이하 선물은 예외
 - ※ 금지된 출처 :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일본 : 5,000엔
 -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
 -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5,000엔(약 50USD)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각성각청의 장 등에게 보고
 - ※ 보고 사항 : 금액, 받은 연월일, 증여 등을 한 사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 등
- 영국 : 25파운드~30파운드
 - 판단이나 청렴성에 타협을 가져올 수 있는 선물, 접대 등 다른 이익을 어떤 누구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되, 각 부처 및 시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수수 기준 마련
 - ※ 런던시 공무원의 경우 25파운드(약 40 USD) 이상의 선물·접대에 대해 관리자(Monitoring Officer)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영국 외무부 공무원의 경우 30파운드(약 47USD) 이상의 선물·접대 수수 금지

- 독일 : 25유로

- 연방정부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선물 수수 기준 설정하되, 금액 초과 선물 수수는 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전 승인 필요
 - ※ 연방내무부 25유로, 연방법무부는 5유로 이하 선물 허용

■ 시사점

- 입법례에서 거론된 국가들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임
 -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더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참고 2 사교적 의례로서 선물과 뇌물의 구별 판례

-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선물은 사교의례의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뇌물성 인정
 - －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관습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선물은 뇌물성이 부정
 - ※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 소액을
수수하였음에도
뇌물로 인정한
사례

- 군(郡)이 발주한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시공 감독등 군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온 부군수가 부군수실에서 위 공사의 도급업자로 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같은 달 25일 거행 하는 원고의 차남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안(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62 판결)
-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 받은 경우,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 1499 판결)
- 비록 위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금 20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차관리원의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에 속하는 경우라거나 보호하여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도합 금 83,500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증뢰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향응 이외에도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 소액을 수수하였음에도 뇌물로 인정한 사례	●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뇌물 수수 인정(대구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99고합504 판결) ● 재건축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하여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사안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인정(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18만 9천원 상당의 호텔식사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뇌물 수수 인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2289 판결)
사교적 의례로 보아 뇌물을 부정한 사례	● 시청 문화관광과 소속 영상지도계장인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어릴 때부터의 관계,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담당업무의 변경, 식사비용이 45,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7 판결). ●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31,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특히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번갈아가며 식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식사비용을 번갈아가며 부담한 점, 식사비가 31,5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2 판결)

라.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 정당한 권원의 판단과 범위

- 제3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 영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형성 가능
- ‘정당한’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이라는,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음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과 제2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전체 맥락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 함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하거나 자신에게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게끔 하는 법률적인 원인을 가진 자’라는 문언적 의미가 있다(2013. 10. 24. 전원재판부 2011헌바138 결정)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 －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2) 사용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 사용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이는 사실상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 가능(무효인 권원)

3) 무이자 소비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 소비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이는 사실상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 가능(무효인 권원)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집행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예외사유로 보기 곤란
 - 예시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과 같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되지 않음
 - 가액산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기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성이 있고, 대대 주임원사가 소속 사병의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금융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구체적 사례(무이자 소비대차 관련)

사례

공무원 A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 B로부터 부동산을 소개 받는 자리에서 사업자 B로부터 1억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일주일 후 1억원을 갚은 경우



4) 가장매매 : 정당한 권원 부정

- 매매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증여하기 위한 가장행위이므로 무효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가장매매에 은닉되어 있는 행위인 증여는 유효하지만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됨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매도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금 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 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구체적 사례(가장매매 관련)

사례

고위공무원 A가 사업자 B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천만원의 매매로 가장한 경우

- 고위공무원 A는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매매의 형식을 빌어 1천만원에 구입 하였으나, 이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행위로 외형상의 행위(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고 숨겨진 행위(은닉 행위)인 증여만 유효

- 매매는 무효이므로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렵고 유효한 행위인 증여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됨
 - ※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 － 고위공무원 A는 사업자인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사업자 B도 고위공무원 A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마.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님

바.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 －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 |

- **(정의)**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 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의 위반행위 성립 범위가 중요한 쟁점
 - 또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중요한 쟁점
-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금품등
 -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구체적 사례(기준 초과 금품등 제공)

사례

초등학교 동창회의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동창회 회원인 중앙부처 공무원 A의 자녀 결혼 시에는 회장 B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 공무원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150만원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회장 B는 공무원 A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
 -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
 -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사.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
 -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도 포함

구체적 판단기준

- 행사 목적 및 내용
 - 행사가 주최자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참석 대상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음
-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 가능
- 준비 절차
 -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 (통상적인 범위)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 －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수준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외 개최 행사의 경우 통상 교통, 숙박 등의 금액이 높으므로 해외 개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 범위에 해당
- (일률적으로 제공)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가능
 - 행사에서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은 해당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관련 판례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현실적으로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위 업체가 개발·판매하는 상품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원들이 영화 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위반자 C가 약 10년간 200회가 넘도록 개최하여 온 신기술 홍보 및 문화행사로서 민간기업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참석대상은 위반자 C의 고객사, IT관련업체의 임직원 등 IT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위반자 C는 담당하는 업무를 위주로 초대 대상을 정하였을 뿐 공무원 기타 특정 집단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대관한 영화관의 수용 인원 한계상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행사내용은 IT신기술 홍보 및 설명에 이은 최신 영화 상영으로 영화세미나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이루어졌으며, 당시 제공된 식사는 1인당 3만 원, 영화는 1인당 2만 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세미나는 다양한 업계에서 홍보행사로 활용하여 온 세미나 방식으로 식사에 영화, 음악, 공연 감상 등 문화예술공연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세미나가 사회통념상 특별히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반자 C는 영화세미나 외에도 등산, 마라톤, 가족동반, 현장체험 등 다수의 문화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 제도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 A, B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식사, 영화관람을 하거나 기념품을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전지법 2017. 3. 27. 자 2016과527 결정)

관련 판례 2

마주등록심의위원회 위원이 마주들의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석함에 있어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통(임대버스)을 무료로 제공받고, 골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품등(교통 46,150원, 골프비용 172,500원으로 산정)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① □는 □법에 따라 설립된, 경마의 시행권을 독점하는 법인이다. 경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주에 출전시킬 경주마가 필요하고, 경주마는 마주에 의하여 □에 등록되어야 한다. □는 마주의 등록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등록 심의는 지역 본부에서 행한다. 위반자는 □마주등록심의위원회 위원이므로, 마주들의 협회인 이 사건 협회와 직무관련성은 당연히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② 물론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단체 혹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그 반대 단체 혹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협회가 □지역의 경마와 관련된 제반 관계자(마주, 조교사, 생산자, □)와의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명목으로 시행한 것인데, 그 명목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적이 접대 등에 가까웠는지가 문제일 따름이다).

③ 이 사건 협회는 2019. 9. 20. 무렵 이 사건 본부에 이 사건 행사에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면서 별도로 당시 □회장이었던 □에게도 참석을 요청한 점, □은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서 이 사건 본부에 ‘골프 행사를 통해 잘 화합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본부는 참석자를 모집하여 총 7명의 참석자를 확정하였으며, 이 사건 행사에 총 3,960,000원 상당의 골프공 4피스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본부의 의사결정은 대체로 공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위반 사실 통보서에는 참석자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직원도 참석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모집이 은밀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은 이 사건 행사를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평가할 수도 있게 하는 사정이다. 그리고 위반 사실 통보서에는 이 사건 행사는 전체가 식사·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반면, 위반자는 제반 관계자의 현안 대화시간 등이 중점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골프 행사’를 식사·접대 위주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아주 그릇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무조건적으로 접대성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기도 하다.

④ 그러나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조교사 측은 2명, 생산자 측은 1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협회 구성원 중 일부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한 후원금을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반자 등 이 사건 본부 측 참석자는 아무런 돈을 지출한 바가 없다. 위반자는 위 3,960,000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지만, 이와 본인이 직접 돈을 지출한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고, 지원한 물품이 이 사건 행사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조교사나 생산자 측 참석자도 본인의 돈을 직접 지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석자 자체가 1~2명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이 사건 행사에서 이 사건 본부를 특별 취급한, 즉 이 사건 본부 측 참석자는 접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고, 아무런 돈을 지출한 바가 없는 위반자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통보된 위반사실상 문제되는 가액은 교통 46,150원, 골프비용 172,500원에 불과하나, 식사비 역시 있을 것이다).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3. 10.자 2021과42 결정).

아.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미가 중요한 쟁점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관련 판례 1

위반자 C(주식회사 법인)의 로고가 자수된 2,500원 상당의 수건은 위반자 C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써 위반자 A가 이를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대전지법 2017. 3. 27. 자 2016과 527 결정).

관련 판례 2

위반자는 기후 및 환경변화와 관련된 월간지를 발행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공공기관이 ○○ 주식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그 홍보실 광고업무 담당자와 광고제재와 관련된 면담을 나눈 후 위 광고업무 담당자 앞으로 연극 초대관람권 6매 24만 원(1장당 4만 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한 사례에서, 위반자는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제공은 위반자가 광고제재를 청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2017과45)

-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
 - －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자.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법령)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 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 재해 부조금, 「의료법」, 「약사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 법률의 내용(예시)

- **도서관법** :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 가능(제47조)
-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품 수수 가능(제17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 모집·접수 가능(제18조)
- **결핵예방법** : 대한결핵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크리스마스쉴 모금 및 그 밖의 모금 가능(제25조)
-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은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접수 가능(제20조)
- **식품기부법**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가능(제5조)
- **기부금품법** : 국가나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발적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는 허용(제5조)
- **방송법** :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 가능(제74조)

－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뇌물성 인정

※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도 법령에 해당

- (기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사규 등의 내부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등만 예외사유에 해당
 -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공자 측이 제공을 허용하는 내부기준이 아님
 - ※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준은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사회상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불확정개념을 사용
 -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구체적 사례

-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받는 경우
-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overbooking)**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우연히 공직자등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 관혼상제,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 공연 등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 입장

관련 판례 1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인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안에서, 경찰관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 특히 고소사건의 수사는 중립적·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크고,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도 있으며, 수사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 수사 진행 중에, 더욱이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D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고 그 가액도 45,000원 상당인바, 이와 같은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금품 제공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따라서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춘천지법 2016. 12. 6. 자 2016과20 결정)

관련 판례 2

위반자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친절하게 대하자, 위반자는 경찰관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표시로 1만 원권 1장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에서,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경우 그 직무관련자 특히 수사대상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금품등의 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 수사기관에 그 직무관련자는 그 의도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관련자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소액의 금품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이 같은 행위는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구지법 2016. 12. 27. 자 2016과204 결정)

관련 판례 3

군부대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위반자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중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반자는 위 중사가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물로 상품권을 건네주려 한 것일 뿐 중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위반행위는 대가성이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반자가 제공하려 한 상품권 가액이 10만 원인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중사와 위반자의 관계, 위 상품권 제공 전후의 상황, 상품권의 가액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17. 3. 21. 자 2016과547 결정).

차. 유권해석 사례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제1호)

Q1_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금품등(이중자위자)

대학교수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공공기관에서 퇴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퇴직 기념으로 지급한다면,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보아 허용되는지요?
2. 이 경우 퇴직시기와 기념품 지급시기(퇴직 후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전에 지급하는 경우)는 1번의 판단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_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공기관을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대학교수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2_ 상·하급 공직자의 의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_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Q3_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직원 결혼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_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 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Q4_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기관장)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소속 임직원 명절선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되는 온누리 상품권(10만원 이내)을 기관장이 받아도 되나요?

A_ 사안의 경우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Q5_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적용 여부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민간기업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혜택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요?

A_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만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제1호 외에 청탁 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

Q1_ 부서장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다수인이 제공하는 금품등)

추석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내 부서 직원 10명이 2만원씩 돈을 모아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_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과 부서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하 ‘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범위는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각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합산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이어야 할 것입니다.

Q2_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제공받은 경우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_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_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가액 범위

대입전형 홍보와 관련하여 대학교로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간단한 기념품,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_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경우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마목 참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Q4_ 직속 부서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의 허용 여부

공무원 A가 자신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 B의 경조사(모친상)에 경조사비(조의금)를 제공해도 되나요?

A_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 1).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제공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 범위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동일 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 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Q5_ 가액 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의 반환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딸의 결혼식을 치른 후 직무관련자로부터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초과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_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6_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제공하는 화환

지방선거 후 당선인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_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 바,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농수산물의 경우 15만원)에서 제공되는 화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Q7_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의원들에게 식사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인 의회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_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집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

Q1_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인센티브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공기관 명의로 인터넷 TV 계약 시 사은품(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가입 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_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제공자 측에서 제공받는 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2_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제공할 상품 후원·협찬

○○광역시가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광역시 소재의 A공공기관이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제공할 상품을 후원·협찬(상품의 가액은 약 1,000만원)하고자 하는바, A 공공기관이 후원·협찬을 할 수 있나요?

A_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の内容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인 법령상의 절차를 거쳤으나 금품등을 수수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 되는 경우,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제4호)

Q_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이고 아들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등 제공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_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제5호)

Q1_ 별도의 회칙 없이 공동경비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속 A과장 및 소속부서 직원 7명이 별도의 회칙은 없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모임을 하고 있고, 점심식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자가 매월 10만원(공동경비)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 공동경비로 과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_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5호), 사안과 같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_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속 직원 자녀의 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져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5급이고 모금대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합니다. 총 모금액은 약 130만원인데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A_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여기서 ‘어려운 처지’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제6호)

Q1_ 통상적인 범위

현재 회사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고 다음 달 중 공장 건설 완공에 따른 준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준공식에 회사 사업 진행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 할 예정입니다(주요 초대 인원 : 투자자, 협력업체 임직원, 고객사 임직원, 관공서 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 직원, 언론사 기자, 학교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그리고 이 준공식 행사 중에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 및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께도 동일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해 드려도 괜찮은지요?

만약 음식물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요?

A_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 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2_ 일률적인 제공

불특정 다수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 중이며, 초대장을 전국의 의료진에게 배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병원 의료진(의사와 간호사) 및 공무원이 대략 150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서울호텔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참석자 중 지방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 교통비를 실비수준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_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 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위의 요건 중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교통, 숙박 등 편의를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이 가능한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상 해당 가액 상당의 금전 제공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나,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제7호)

Q1_ 경연·추첨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병·의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반 사립병원, 의원 등 전국 30개 병·의원이며 1등상 약 100만원(1명), 2등상 50만원(2명), 3등상 30만원(6명)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_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단, 이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경품 등의 방식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를 제공자 측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2_ 경연·추첨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A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_ 공무원은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Q1_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초·중등교육법)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기숙사생들을 위해 의자를 기부하시겠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_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기부·후원으로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제32조(기능)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Q2_ 외국정부가 제공하는 금품등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 부담) 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_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

Q3_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음향(악기)기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100명에게 음악노트 등(2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신청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_ 신청한 사람이라면 선착순으로 100명에게는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음악노트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신청자 중 공직자등이 해당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_ 경조사에서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 범위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_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이 가액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5_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물·음료 등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_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Q6_ 지역 축제 행사 자원 인력에게 제공되는 식권

지자체 축제 등 행사에 자원 나온 공직자등에게 식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_ 지역 축제 등 행사 지원을 위해 동원된 공직자등에게 다른 자원 인력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식권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가액의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위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2023. 8. 30.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상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식권(이하 '식권')은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이 5만 원 이내의 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사례

Q1_ 공공기관이 지방의원들에게 해외출장 비용 지원

○○시 산하 A공공기관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해외에서 개최하며, 워크숍에 ○○시의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시의원들의 교통, 숙박 비용은 초청자인 A공공기관에서 부담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_ 외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해외 출장 경비의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합니다.

※ (국제행사 유치)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수영·탁구·조정·태권도·바둑 등 선수권대회, 세계 잼버리대회, 세계마술올림픽대회, 세계비엔날레 등

※ (국책사업 수주) 건설해양플랜트 등 국책사업 수주 등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출장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해당 출장이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출장이 반드시 국외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 ▶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출장목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출 것,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하지 않을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출장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 등
- ▶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 ▶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일 것, 출장인원 수에 맞는 적정한 경비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또한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이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Q2_ 직무관련 민간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 비용(수익자부담 규정)

특정제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A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시 해외제조사의 설비를 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외출장검사가 필요한데, 이 때 검사수수료 외에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을 검사 신청을 한 제품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_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용역, 도급,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을 제한하고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직무관련 민간 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란 해외출장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련 법령·기준은 ①현지 확인(수출입 여신심사, 조사·검수·검역 등)을 위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 절차·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③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형법」 상 사회상규 관련 판례

-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 개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개념과 동일적으로 해석 필요
 - － 「형법」 상 사회상규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0조에서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통일되게 해석 가능**(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춘천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과20 결정 참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A가 축의금으로 낸 돈 10만원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와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A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774 판결)
2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 행한 서류작성 대행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 등 관계 법령이 열거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3	시청 문화관광과 소속 영상지도계장인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어릴 때부터의 관계,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담당업무의 변경, 식사비용이 45,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이라는 사례(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7 판결)
4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31,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특히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식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식사비용을 번갈아가면 부담한 점, 식사비가 31,5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는 사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2 판결)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한 사례

1	노동청 해외근무국장으로서는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은 경우, 비록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2	재건축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피고인과 공무원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및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 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3	비록 위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금 20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차관리원의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에 속하는 경우라거나 보호하여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4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도합 금 83,500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증뢰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향응 이외에도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5	군(郡)이 발주한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시공 감독 등 군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온 부군수가 부군수실에서 위 공사의 도급업자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같은 달 25일 거행하는 원고의 차남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례(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62 판결)
6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3만 원을 초과하여 5만원을 지급한 경우,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83 판결)
7	제3자가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 하에 타인의 술값 4만원을 지불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8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이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한 사례

9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10	국회의원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협조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11	병원 약제부장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화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약제부장과 의약품 도매상 사이에 업무적인 관계 이외에 개인적으로 명절이나 연말에 금원을 수수할 친분관계가 없으며, 수수된 금액이 상당하고 매우 정기적으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는 등 금원의 수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뇌물이라는 사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2	피고인의 군수로서의 인사에 관한 직무의 내용, 피고인과 부하직원 간의 관계, 인사 청탁의 내용,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시기가 인사발령을 앞둔 시기인 점,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승진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50만원에 불과하고 인사청탁과 함께 설날 세뱃돈의 형식을 빌려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성이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3	국립대 교수가 고가의 병풍, 금원앙 등을 의례적인 결혼축하 및 인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에는 해당 교수와 금품 제공자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고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는 일도 없었던 점, 결혼 6개월 경과 후 결혼선물명목으로 제공한 점, 금품이 고가품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교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무

-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법 시행령 제18조)
 -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필요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 공직자등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다만,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도록 해야 함
 - ※ 인도하는 경우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지체 없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관련 판례

위반자인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자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위반자는 “각자 본인 음식값을 내자”고 반환의사를 지체 없이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는 않았고, 5일후인 2017. 7. 5.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000원을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한 사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2018과41)

4)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필요적 면제)

－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지체 없이’ 하였는지가 중요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유권해석 사례

Q_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 B가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 청탁 금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_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청탁 금지법 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그러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

여기서 '지체 없이'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가능한 빨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라는 의미로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 한계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A는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 (반환 등 요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야 함
 -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징계절차의 진행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요구
 -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가능
 -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 예외사유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 청탁금지법
-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장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제정 이유

- 일부 공직자등의 과도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 공직자등이 기업,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어 규제
- 다만,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라는 외부강의등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이 노동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될 필요
 - －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만 규율
 - － 또한, 사례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여 초과사례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공직자등과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20. 5. 27.시행)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20. 5. 27.이후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됨
- 또한,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

나. 외부강의등의 범위

1) 법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와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관계

- 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2)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 청탁금지법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 －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음
 - － 다만,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3)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

- 공직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신고 사항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

※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 불필요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외부강의등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들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라.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1) 사례금 상한액(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의 150/100 초과 불가	제한 없음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설정
-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1회의 강의 당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 여기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의미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 단체의 여비 규정이 아니라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여비 규정(소속된 기관 여비 규정)을 말함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2) 사례금 각각 지급가능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가능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
같음	같음	같음	다름	○
같음	같음	다름	같음	○
같음	다름	같음	같음	○
다름	같음	같음	같음	○

※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사례금 각각 지급 가능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을 불문하고 사례금 각각 지급 가능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각각 지급 가능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각각 지급 가능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신고의무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500만원 이하)	

※ 여러 차례에 걸쳐 초과사례금을 수수했을 경우, 수수행위마다 별개의 과태료 부과 요청

참고 외국 입법례

미국

정부윤리법

- 공직자는 재직 중에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직위로 인한 출연·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어떠한 사례금도 제공받을 수 없고, 위반시 1만불 이하의 민사벌금 부과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

- 뉴욕시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뉴욕시를 제외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상(compensation)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의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사례금(gratuity)을 받는 행위를 금지

영국

영국 장관 행동강령

- 장관이 자신의 공식적인 직위, 장관으로서의 경험 또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설 또는 매체 기고문에 대한 대가로 보수(payment)를 받는 행위를 금지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뢰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강연, 토론, 강습 또는 연수에 있어 지도 또는 지식의 전수, 저술 감수, 편찬,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할 경우는 사전에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윤리감독관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해 직원의 직무의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직원들이 참고로 해야 할 기준을 정하도록 함

마. 유권해석 사례

Q1_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역할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2_ 경진대회 참가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기관 소속 공직자가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가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_ TV 또는 라디오 인터뷰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교통안전 관련 교육, 홍보, 연구 등을 하는 ◇◇공단 직원들이 교통안전 상식 전달, 대형교통 사고 관련 의견 개진 등의 내용으로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하였다면 청탁 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_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4_ 축하, 기조연설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민간기관이 개최하는 포럼 축에서 공직자등에게 축하 또는 기조연설을 요청하여 공직자등이 해당 축하 또는 기조연설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되나요?

A_ 축하 또는 기조연설이 단순히 축하나 환영인사를 하는 것이라면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_ 공직유관단체 비상임임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규정 적용 여부

민간기업의 재직자가 ○○공직유관단체에서 비상임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_ ○○기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 그 소속 임직원(비상임임원 포함)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민간기업 재직자이면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수행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6_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공공기관의 임원인 A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_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_ 대학 내 산학협력단 강의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 강의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게 되나요?

A_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산하기구이고,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의 소속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강사료는 학교의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Q8_ 강의관련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한 학기 강의를 전담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는지요?

A_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62호, 제10장)

3.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Q9_ 논문심사, 서면자문 등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현재 ○○국립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논문심사 등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까? 며칠 전에는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법률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면자문은 어떻게 됩니까?

A_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강연’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_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학교 교수님께서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셨고, 회사에서 원고료(집필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_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절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11_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기고’ 해당 여부

방송사가 역사 탐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역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_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므로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12_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우리 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세미나 참석, 평가위원 활동 등 대외활동을 신고할 때 무조건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기타 증빙자료(이메일, 세미나 팸플렛 등)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부서장에게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반드시 기관장에게 해야 하는지요?

A_ 공직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령상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Q13_ 1시간 초과 강의시 사례금 상한액 계산방법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1시간 30분 강의를 했다면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A_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고 청탁금지법상 별도로 총액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1시간 30분 강의를 한 경우라면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례금 상한액일 뿐이므로 각급 기관의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상한액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Q14_ 사례금 상한액이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해달라고 하며 사례금으로 4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례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세후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A_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15_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 허용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_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동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참조).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징계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금품등이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 － 공직자등이 신고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다. 과태료 부과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과태료 500만원 이하)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취소

-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지체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
 -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
- ※ 청탁금지법
 -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청탁금지법 시행령
 -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보)**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 관할법원이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재판(결정) 형식으로 과태료 부과
- ※ 비송사건절차법
 -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민간인 및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포함)도 통보
 - ※ (주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자진신고를 하여 면책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은 금품등의 제공자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 필요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마.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 (몰수·추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법 제23조제6항)
 -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PART VI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기관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3. 신고등의 보호·보상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PART VI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기관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으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중립적 부패 방지대책 중심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에 대한 사후 통제 기능과 사전 예방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 － (사후 통제 기능)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등
 - － (사전 예방 기능) 부정청탁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부정청탁 등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도 가능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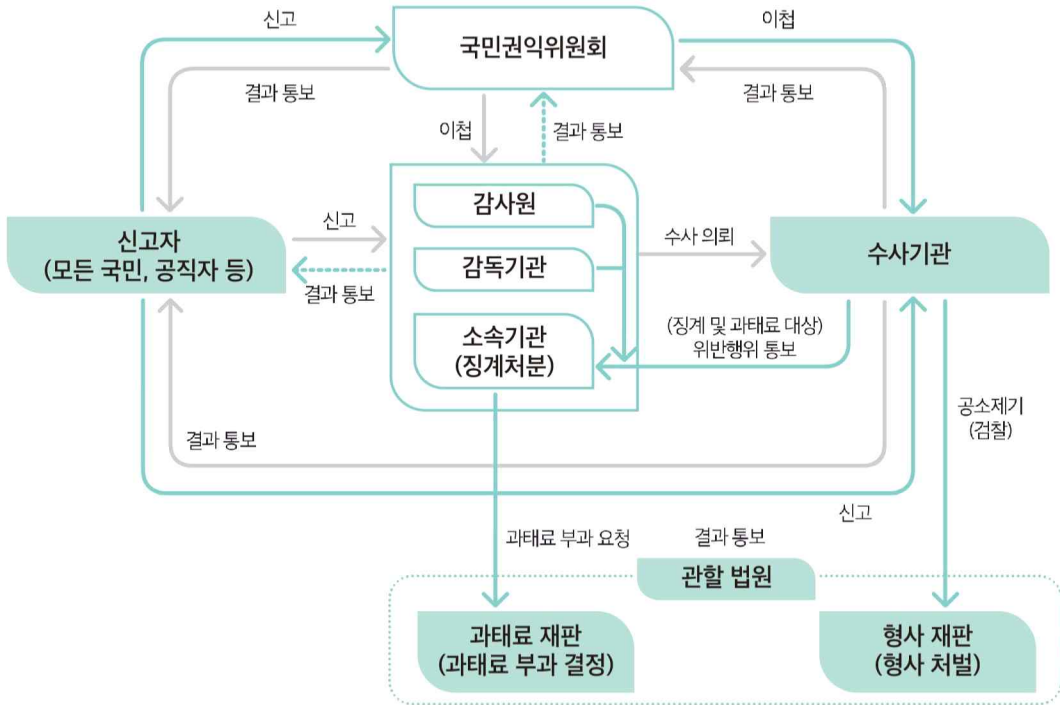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신고 및 처리 절차 체계도



가. 위반행위의 신고

1) 청탁금지법상 신고 체계

-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신고주체: 공직자등)의 신고와 법 제13조 제1항(신고주체: 누구든지)의 신고가 있음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임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하는 신고임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함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할 필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는 소속기관 외에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나. 신고 처리

1)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2)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수사를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 조사·감사·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조사기관은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사기관의 조사 범위

-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수사 실시

※ 청탁금지법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조사기관은 소속 공직자등 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제3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도 가능

※ 위반행위자가 모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

-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임의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협조가 없는 한 강제할 방법은 없음(수사기관 제외)

※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다.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1) 이의신청

-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 가능

2) 재조사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등의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 요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 제시 필요
- 재조사 요구를 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

3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보호·보상 대상 신고자

1) 개요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특성상 공직자등과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
 -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필요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

2) 보호 대상 신고

-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로 구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이건 ‘공직자등’이건 상관없이 이 법에 따른 신고는 모두 보호의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보상 대상 신고

- 포상금·보상금 지급 대상은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한 경우로 규정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포상금·보상금 지급대상은 문언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이므로 제7조제2항·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제외
 - －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임

◆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자 보호

1) 비실명 대리신고

-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있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 도입(2022. 6. 8.개정·시행)
 - ※ **비실명 대리신고란** 기명신고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시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됨

2)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 (인적사항의 공개·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2조제1항제4호)
- (신변보호)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3)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
 -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 수준
 -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그 외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

-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금지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 가능
※ 그 외 책임감면의 내용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다만, 허위·부정 목적의 신고는 제외)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자의 사용자·인사권자는 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관련 판례

위반자가 공직자인 4급 계장에게 40만 원 상당의 향응 및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제공한 후 자신신고한 사안에서, 위반자는 공직자 D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반자는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위반자가 D에게 적극적으로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D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를 제공한 사정, 제공한 향응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해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한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9. 16.자 2019과10 결정)

다. 보상금·포상금·구조금

1) 보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 (지급사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
 -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의 보상금 지급사유
 - 물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제1호)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2호)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제3호)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제4호)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제5호)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제6호)
-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 신청 및 결정) 신고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필요
 -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함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함
 - ※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함

2)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 (지급사유)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의 포상금 지급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제1호)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제2호)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제3호)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5호)

- (지급기준) 포상금은 5억원 이하로 함

※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함

3) 구조금 지급사유 및 산정기준

- (지급사유) **신고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구조금 지급사유(법 제15조 제7항)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제1호)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제2호)
-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제3호)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제4호)
-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제5호)

- (산정기준) 지급사유의 각 호에 따른 구조금을 산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

-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제1호)
-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제2호)
- －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제3호)
- －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4호)

-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제5호)

※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4) 보상금·포상금에 공통되는 사항

- (신청 경합)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보상대상가액, 포상금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간주

-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

※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

- (감액) 보상금·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일정한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 가능

※ 고려사유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환수)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가능

※ 환수사유

-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5) 민간부문인 기관 관련 신고자의 포상금·보상금 지급 문제

- 신고로 인하여 민간부문인 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도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민간부문인 기관에 대한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 가능
- 공공기관의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공익증진을 위한 신고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필요

- 보상금

- 국고의 회복·증대 없이 민간부문인 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만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불가능
 - ※ 보상금은 국고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국고에서 지급
-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는 의미는 국고의 회복·증대를 의미하고 사적 재산의 회복·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가.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법 제16조)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예방적 조치로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의 조치 가능
-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또는 신고 등의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도 가능(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5항)

2) 부당이득의 환수

- (개별 법률과의 관계) 다른 개별 법률에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환수
- (환수사유)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과 수행한 직무 자체의 위법이 모두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 환수 가능
 - 일반적으로 제6조를 위반하여 한 직무수행의 경우 직무 그 자체도 위법하나, 제5조 및 제8조를 위반하여 한 직무수행의 경우 제5조 및 제8조 위반여부와 별개로 직무 그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란 재판 등의 불복절차에 따라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 (환수대상) 직무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나. 비밀누설 금지

- (주체)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
- (대상)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 뿐만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
 -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 (행위) 누설이란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고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 (형사처벌)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직자등 중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도 성립 가능
 - ※ 형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 또한, 공직자등이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위반도 성립 가능
 -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 교육과 홍보

-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연 1회 이상)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을 의무가 있음
 - 또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 요청 가능

라.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필요
 - 그 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업무 수행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 및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금품등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히 보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PART VII

징계 및 벌칙

1. 징계
2. 벌칙
3.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및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 취소
5. 양벌규정

PART VII

징계 및 벌칙

1 징계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가능(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이 법(제5조)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공직자등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금품등을 수수한 후 지체 없이 신고 및 반환·인도한 경우,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
 -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징계대상에서 제외

2 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7.>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벌칙 조항의 정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 조항의 정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기타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 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¹⁾ 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3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첩

-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 유사 입법례(공직자윤리법)

제30조(과태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광역시교육감이 D사립학교 교직원인 A, B가 부정청탁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위반자들을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한 사례에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법원 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소속기관장 이라고 할 것인데, 위반자 A, B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인 D고등학교의 교직원인바, 그 소속기관장은 청탁 금지법 제2조 제4호, 제1호 라목에 따라 D고등학교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반자들의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재판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부산지방법원 2022. 2. 10.자 2021과40 결정)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 －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통보 가능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자진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보 필요

관련 판례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위반자는 2018. 9. 4~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에서, ○○시의회의원 12명은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시의 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여 면책되었으나, 제공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2018과3)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나. 과태료 부과

-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결정)의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그 밖에 과태료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관련 판례 1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청탁금지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B군수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위반사실 통보만 한 경우에도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춘천지방법원 2020. 2. 5.자 2019과33 결정)

관련 판례 2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2016과20)

-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 가능
 - 다만,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위반자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자로서,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친절하게 대해주자 감사의 의미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자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반자는 경찰관이 명백히 거부의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경찰관은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로 인하여 자진신고 후 그 경위에 대하여 감찰관에게 진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금품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6과204)

다. 유권해석 사례

Q1_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퇴직한 경우 과태료 통보 절차

공공기관 감사 시 퇴직자인 A가 재직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A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통보의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A_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13조의 ‘신고’를 과태료 부과 통보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위사건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소속기관장은 해당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Q2_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주체

○○시는 자체 감사 중 소속 공무원 A가 직무관련자인 ◇◇공직유관단체 직원 B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고자 하는바, ○○시장의 소속 공무원인 A 외에 ◇◇공직유관단체 직원 B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도 할 수 있는지요?

A_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유관단체 직원 B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인 ○○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위반으로 판단되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제공자인 ◇◇공직유관단체 직원 B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과태료 부과 취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목적·내용 등이 상이하여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과태료 부과 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함
 -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 과태료를 부과한 후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

-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청탁 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취소규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

관련 판례

○○공사 직원이 2017년 설 또는 추석 무렵 직무관련자인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B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5만 원 상당의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사례에서, 위반자가 위와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이 포함된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269 사건에서 뇌물수수죄로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인천지방법원 2021. 11. 29.자 2019과108 결정)

관련 판례

○○은행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7.자 2021과12476 결정)

5 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5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도 제재
 - － 다만,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관련 판례

연간보고서 제작 용역업체 B의 대표자가 연간보고서 제작 완료 후 납품하면서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B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한 사례에서, 행정청은 'B'가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위반자를 '주식회사 B'로 하여 위반사실을 통보 하였으나, 'B'는 상법상 회사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므로 행정청이 통보한 위반자는 'B'를 운영하는 위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자 2021과55 결정)

나.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1) 면책사유

-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위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 기업의 거대화에 따른 분산된 운영과 의사결정, 복잡한 재무구조 및 회계관행에 비추어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있음
 - 다만, 형벌의 책임주의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규정 적용 가능
- 여기서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와 감독을 다해야 면책될 수 있는지가 문제

2)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 청탁금지법상 사업주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 필요

관련 판례

① 위반자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 8. 25.경 법무법인의 청탁금지법 관련 변호사를 초빙하여 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준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② 2016. 9.경 위반자로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제공금지서약서’를 제출받고, 위반자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해설집을 배포한 점, ③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개별 공사현장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위 ○○○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2017과5)

- 다른 법령상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

-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 외에 미국에서 발전한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Anti-corruption compliance)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참고 1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Anti-corruption compliance)²⁾

- 미국의 경우 기업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
－ 단순히 컴플라이언스를 마련하였다고 능사가 아니며 그 컴플라이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가이드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내용 요약**

- 간부 등 상층부에서부터 부패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 및 정책이 확립되어 있을 것
- 명확하고 자세한 윤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전 사원에게 전파하고 습득시킬 것**
- 조직 내에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구비하는 등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에 투입할 것**
-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을 효과적이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 전사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철저히 집행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
- 회사구성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개발과 향상 혹은 부패행위 적발 등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구비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절차** 등을 구비할 것
- 의심되는 부패행위 적발 시 보복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내부적인 고발이나 보고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구비**해야 하며, 내부고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은폐하지 않고 철저히하고 효과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것

2) 오택림, 국내뇌물죄와 해외뇌물죄의 비교 연구-FCPA, UK Bribery Act 등 외국 법제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169쪽~174쪽

참고 2 영국의 뇌물방지법 안내서 상 면책사유³⁾

- 영국의 경우 상사조직의 임직원, 에이전트(agent), 자회사 등 관련자가 그 상사조직을 위해 사업을 획득하거나 사업과정에 유리한 혜택을 얻을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상사조직에 대해 형사책임 부과
 - 다만, 상사조직이 관련자의 뇌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adequate procedures)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 가능

※ 영국정부가 내 놓은 뇌물방지법 안내서 상의 6개의 원칙

- Proportionate procedures : 상사조직은 당면한 부패위험과 업무영역의 성격,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하는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는 원칙
- Top-level commitment : 상사조직의 최고위층이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Risk assessment : 상사조직은 자신이 노출된 예상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패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체크해야 한다는 원칙
- Due diligence : 상사조직은 부패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 혹은 자신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 Communication(including training) : 상사조직은 자신의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가 조직 전반에 스며들고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전파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원칙
- Monitoring and review : 상사조직은 자신의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

3) 오택림, 앞의 논문, 161쪽~165쪽

참고 3 법인 관련 쟁점의 정리

[검토 배경]

- 자연인이 청탁금지법상 금지규정(구성요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론이 없음
 - － 개별 벌칙규정에서는 해당 금지규정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자연인은 개별 벌칙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 － 종업원(자연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제재
- 실제로 기관인 자연인(임직원)을 통해서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위반행위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연인을 전제로 한 개념
 - ※ 청탁금지법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법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의 제공행위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즉 자연인을 통해서만 가능
 - －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실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의 제공행위를 할 수 없음
 - ※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됨(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제재대상자]

- 금지규정(구성요건)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종업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 (법인)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쟁점]

법인 소속 임직원의 청탁이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인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임직원의 업무 관련 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으로 결국 그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법인 관련 청탁의 동일한 부정청탁 판단기준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동일한 부정청탁의 범위를 공직자등의 입장에서 설정
-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법인이 금품등의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 동일인에 자연인 외에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범죄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이 포함되는지 문제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또한,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
 - － 금품등의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는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임직원(자연인) 외에 법인은 제외됨
 - ※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에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는 것과의 통일적 해석 필요
-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



VII

징계
및
처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APPENDIX

부 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재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3278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83호, 2016. 5. 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16324호, 2019. 4.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부칙 〈제16658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2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2호, 2021. 4.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8576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81호, 2021. 1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9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 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

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부칙 〈제27490호, 2016. 9. 8.〉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90호, 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21호, 2018. 12. 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20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장 등의 이첩·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15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31410호, 2021. 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1년 2월 1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부칙 〈제32324호, 2022.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9호, 2022. 6. 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89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 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 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 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 해서는 안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